

# 북한과 베트남의 환경보호법제비교연구

1999. 12

研究者：崔哲榮(首席研究員)

한국법제연구원



# 목 차

I. 序論	5
1. 北韓 外國人投資法制的 運營現況	5
2. 우리나라의 對베트남投資와 外國人投資法制	6
II. 社會主義國家의 環境保護관련 立法動向	9
1. 北韓의 環境관련 立法	9
(1) 環境政策과 立法動向	9
(2) 環境保護關係法制的 沿革	12
2. 베트남의 環境관련 立法	12
(1) 베트남 立法體系의 特徵	12
(2) 環境保護法制的 沿革	14
3. 舊 社會主義國家의 環境保護관련 立法	14
III. 北韓과 베트남의 環境保護法制分析	17
1. 環境保護法制的 構成	17
(1) 北韓의 環境保護法制	17
(2) 베트남의 環境保護法制	20
2. 環境汚染·環境惡化의 防止 및 救濟	24
(1) 北韓의 環境汚染防止	24
(2) 베트남의 環境事故·環境汚染·環境惡化의 防止 및 救濟	27
3. 環境保護管理 擔當機關	28
(1) 北韓의 環境保護指導管理體系	28
(2) 베트남의 環境保護管理擔當 國家機關	29
4. 環境保護違反에 대한 制裁	32
(1) 北韓의 環境被害에 대한 損害補償 및 制裁	32
(2) 베트남의 環境保護行政違反에 대한 處罰	33

IV. 베트남의 環境影響評價制度 .....	37
1. 環境影響評價對象 프로젝트 .....	37
(1) 環境影響評價의 定義 및 프로젝트의 範疇化 .....	37
(2) 프로젝트의 範疇化의 內容 .....	39
(3) 環境影響評價對象프로젝트의 目錄 .....	39
2. 투자프로젝트의 段階別 環境規制 .....	41
(1) 投資프로젝트 許可書 申請段階 .....	41
(2) 計劃 및 建設段階 .....	44
(3) 建設完了段階 .....	47
3. 環境影響評價報告書 審査 및 承認 .....	47
(1) 審査 및 承認 機關 .....	47
(2) 審査 및 承認 節次 .....	50
(3) 環境影響評價方法 및 그 基準 .....	51
4. 審査에 대한 不服節次 .....	51
V. 北韓과 베트남의 外國人投資法과 環境保護 .....	53
1. 北韓의 外國人投資관련法에 있어 環境保護規定 .....	53
(1) 外國人投資法 .....	53
(2) 合營法施行細則 .....	53
(3) 外國人企業法施行規程 .....	54
(4) 自由經濟貿易地帶法 .....	54
(5) 自由貿易港規程 .....	54
(6) 土地貸貸法 .....	55
2. 베트남의 外國人投資關聯 環境規制 .....	55
(1) 베트남의 外國人投資法導入背景 .....	56
(2) 環境規制遵守義務 .....	56
(3) 環境規制方式 .....	56
3. 對北韓 및 베트남 投資時 考慮事項 .....	57
附錄 .....	61

## I. 序論

### 1. 北韓 外國人投資法制의 運營現況

북한과 베트남 그리고 중국은 모두 사회주의체제를 고수하면서 동시에 국내에 외국자본과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대외경제개방정책을 추진하는 아시아지역 국가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다. 북한과 베트남의 외국인투자관련법은 중국의 그것을 모방하고 있지만, 여러가지 면에서 아직 미흡한 상태이다. 중국 역시 개혁개방초기에는 불완전한 상황에서 출발하였으며,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불완전한 상태로 두고 실험부터 해보고 추후 개선한다는 것을 전제로 개방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최초 외자도입법이라 할 수 있는 중외합자경영기업법이 1979년에 제정된 것과 비교하여 베트남의 외국인투자법은 1986년, 북한의 합영법이 1984년에 제정된 사실에서 나타난 것처럼 대외개방의 필요성을 법제화한 시기에 있어 중국과 북한 및 베트남이 5-7년의 차이가 있다. 단순한 입법시기의 차이를 넘어서서 대외개방과 국내경제에의 시장경제체제 도입에 있어서 중국이 저만큼 많이 앞서 정착화되어가고 있다면 베트남은 각종 외국인투자관련법을 적극적으로 상세하게 제정함으로써 외국인투자의 불확실요소를 배제하여 중국을 뛰어서 따라 잡으려고 하고 있는 상태이며 북한은 국내의 식량난과 주민의 이탈 등 정치적 상황으로 인하여 대외개방과 시장경제적 요소의 도입이<sup>1)</sup> 늦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투자관련법과 환경관련법 또한 체계가 불확실하고 구체적인 시행세칙들이 공포되지 않아 중국이나 베트남에 비하여 매우 소극적으로 개방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북한에는 현재 20여개의 외국인 직접투자관련 법령이 있지만 수백개의 법령이 있는 중국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빈약하다. 북한의 관련 법령들은 외국인투자의 모든 활동에 적용되기에는 너무나 많은 흠결을 가지고 있으며 투명성과 구체성이 없다는 점이 특징이다.

근본주의적 이념으로 무장된 북한에서는 법보다는 정치가 우선하고, 국가기

1) 최철영, "대북정책의 변화와 남북교류협력법의 개선방안", 성균관법학 제10호(1999), 444면.

## I. 序 論

구보다는 당이 우선하는 사회주의적 통치방식이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법치주의로의 전환이라는 것은 그들에게는 대단한 모험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북한의 외국인투자관련법의 구체적인 시행에서 가장 우려되는 점은 바로 이러한 사회주의국가 특유의 통치방식에서 비롯된다고 할 것이다. 북한에도 환경보호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그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 공표되어 있지 않고 환경보호법의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도 존재여부가 알려져 있지 않다. 하지만 각종 외국인투자관련법에서는 외국인기업에 대해 북한의 환경보호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외국인투자자에게 불안요소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북한 환경보호법제의 내용소개 뿐만 아니라 북한의 외국인 투자관련법에 있어서 환경보호관련 규정을 살펴보고 북한에 대한 투자시 유의해야 할 점들을 고찰하고자 한다.

## 2. 우리나라의 對베트남投資와 外國人投資法制

과거 베트남은 공산화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국가들의 경제제재 조치로 인하여 사회주의 종주국인 구소련에 경제문제를 크게 의존하였으나 1986년이래 도이머이(刷新) 정책의 추진으로 외국인투자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sup>2)</sup> 또한 베트남정부는 1992년의 헌법개정을 통해 과거 당의 지도이념에 종속되어 있던 행정부수반(총리)의 권한을 확대하여 국가정책운영에 지도력을 부여함으로써 행정부가 도이머이정책을 책임있게 추진하도록 하였다.

우리나라는 1962년 남베트남과의 무역협정을 계기로 활발한 경제교류가 이루어졌으나 1975년 베트남의 공산화로 단교된 후 20여년간 외교공백상태였으나 1992년 12월 22일 베트남과 공식적 외교관계를 회복하고 1993년 베트남총리의 방한시에 『韓·베트남 무역협정』을 체결하여 그 동안 우리나라기업의 베트남 진출에 걸림돌이 되어왔던 유·무형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베트남투자자에 대한 법적 보호를 양국간의 협정체결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대베트남 투자는 국내의 사양산업을 중심으로 증대되었으며 1996년말 현재 제4위의 대베트남투자국으로서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2) 도이머이정책은 아시아역내경제 및 세계경제에의 참여와 대외개방을 통한 외국과의 경제협력확대, 시장경제요소의 적극적인 도입추진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 최철영, 베트남의 외국인투자관련법제, 한국법제연구원, 1993, 3면.

그러나 우리기업의 베트남진출이 늘어남에 따라 우리기업이 베트남의 사회·문화적 관습 및 투자관련 법규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해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되어 왔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베트남의 외국인투자법, 노동법, 수출입세법, 외국경제조직의 대표사무소에 대한 정부의정서 등 많은 법령이 소개되었으나 외국인투자기업이 투자승인을 받기 위해 승인신청서류로 갖추어야 하고, 베트남내에서의 기업활동중에 준수해야하는 환경보호관련법과 규정은 소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알려져 있지 않은 베트남의 외국인투자프로젝트와 관련된 환경보호법제를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환경규제법제의 정확한 이해를 위하여 베트남의 일반 법규범체계와 외국인 투자관련 환경규제에 관하여 간략하게 살펴본 후, 베트남의 환경보호법제와 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 개관한다. 그러나 베트남환경기준은 그 빈번한 변경과 입수의 곤란 등을 이유로, 그 근거법규만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고자 한다.





## II. 社會主義國家의 環境保護관련 立法動向

### 1. 北韓의 環境관련 立法

#### (1) 環境政策과 立法動向

##### 1) 環境정책의 법제화

북한에서의 환경정책은 북한 당국이 1986년 4월 6일 「환경보호법」을 채택하여 환경보호정책을 법제화하고 1992년에 제정된 헌법 제57조에 환경보호규정을 명문화하면서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sup>3)</sup> 이는 우리나라 「환경보전법」이 1977년, 중국의 「환경보호법」이 1979년, 일본의 「공해대책기본법」이 1967년에 제정된 것과 비교할 때 10년 내지 20년 뒤져 있는 것으로서 북한이 환경문제를 사회전반적인 문제로 인식하는 시기와 사회경제발전 속도가 낙후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폐쇄적인 사회주의적 자급자족경제체제를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어서 노동력과 자원의 과도한 이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만성화를 초래, 경제발전 속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욱 악화된 환경문제를 안고 있는 실정이다.

##### 2) 環境오염문제

북한의 環境오염실태 가운데 대기·수질·해양 등의 오염과 토양자정능력 저하, 그리고 동·식물의 남획으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지적하고 있는 제2차 자료<sup>4)</sup>들이 적지 않다. 이러한 현상은 북한이 1960년대부터 추진해 온 「4대군사노선」에 의한 전국토의 요새화, 1976년 채택된 「자연개조5대방침」 가운데 「다락발전설사업」과 1980년대 10대 전망목표로 추진한 「새땅찾기 사업」의 농업진흥책과 같이 양곡양산을 위한 산림파괴 및 토양침식 등 현실적인 경제사정에서 초래되기도 하였고, 북한의 명승지에 새겨지는 김일성-김정일 찬양문구를 「자연바위글밭」이라고 하여 「기념비 서예의

3) 북한의 환경보호법에 대한 상세한 분석과 토지법, 외국인투자법 등의 환경관련규정에 대한 소개는 김창규, 북한의 환경보호관련법제, 한국법제연구원, 1995 참조.

4) 손기영, 「북한의 환경정책과 환경실태」, 한국정치학회, 「지속적 성장과 환경보호 정책」, 1995. 8 ; 남영숙, 「남북한 환경분야 상호협력방안」, 「통일과 환경」 1995년 가을.

## II. 社會主義國家의 環境保護관련 立法動向

한 구성분야'로서 합법화<sup>5)</sup>하고 있는 잘못된 인식에서 기인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소련형 공업화 모델에 입각한 북한의 산업구조와 그에 따른 낮은 환경의식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sup>6)</sup>

북한의 산업구조는 경공업을 무시한 중화학공업 편중구조로서 환경문제에 관한 한 지극히 위해적인 요인을 구조적으로 간직하고 있는데, 중화학공업이 배출하는 각종 오염물질·사회간접자본시설의 부족·환경정화시설의 낙후 등이 현상적인 측면이라면, 주민의 소비부문을 도외시함으로써 야기되는 북한주민의 낮은 환경의식수준은 의식적 차원의 문제가 되고 있다. 중공업 등 2차산업이 강조되는 산업구조에서는 에너지의 양산과 경제성장에의 노력이 중요환 사회지표가 되어 자아실현의 욕구나 다양한 소비의욕 등이 상대적으로 좌락시되는 산업사회적 병폐현상<sup>7)</sup>이 두드러지는데, 이는 환경문제에 있어서도 환경보호의 사회적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저해하기 마련이다. 이와 같은 북한의 산업구조와 환경의식수준은 환경문제에 대한 입법적 대처에도 소홀하게 되어 1986년 「환경보호법」이 제정되기 이전까지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었다.

### 3) 환경보호활동

「환경보호법」 제정을 전후하여 북한은 외형적으로 매우 활발한 환경보호정책을 실시하면서 1992년 헌법개정시 이를 명문화하고, 1990년대 제정된 일련의 외국인투자관계법제에서 외국기업의 투자와 기업활동에 의한 환경오염방지규제를 입법화하여 UN에서 결정한 6월 5일의 「세계환경의 날」 행사를 성대히 치르고 있다. 1993년의 기념행사에서는 국가환경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지구환경변화와 민족적 임무를 강조하고,<sup>8)</sup> 평양의 조선중앙통신을 통하여 북한의 환경보호정책 내지 노력을 다음과 같이 홍보하고 있다.

“환경보호를 국가활동의 중요한 원칙으로 하고 있는 공화국에서는 1986년 4월의 최고인민회의 제7기 제5차 회의에서 「환경보호법」을 채택했다. 그래서

5) 박상철·김창규, 北韓의 文化財保護關係法制, 한국법제연구원, 1995, 35면.

6) 북한환경문제의 직접적인 원인이 북한식 사회주의가 갖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과 북한 당국이 추진했던 정책의 실패에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손기웅, 남북한 환경분야 교류·협력방안연구: 다자적·양자적 접근, 민족통일연구원, 1996, 10-16면에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7) 박상철 외, '94國民法意識調查研究, 한국법제연구원, 1994, 67면.

8) 『로동신문』, 1993. 6. 4.

매년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부응하여 국가의 환경을 특히 정비하고, 노동자의 복리증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

“국토관리총국 산림관리국에 집계된 자료에 의하면 금년 봄에 전국적으로 5만여 헥타르(ha)의 땅에 2억 8천만목 이상의 나무를 심었고, 주요 산업지구와 주민지구에 수천ha의 공원림이 조성되었다. 각지에 경제림(經濟林), 유지림(油脂林), 풍치림(風致林)이 조성되고, 도시와 농촌에 수십만 평방미터(m<sup>2</sup>)의 공원, 유원지, 백화원(百花園)이 건설되었다 …….”

“현재, 국가의 대기오염측정치는 국제적인 대기보호한계기준치의 10분의 1에도 못미치고, 물·토양의 위생기준도 세계적인 선진수준에 달하고 있다 …….”

“대화학공장과 제철소의 구내에까지 썩이 날아들고 다양한 조류가 살고 있으며, 하천과 호수에 수많은 어류가 헤엄치고 있다.”

“현재, 공화국에는 6개의 자연보호구와 29개의 동식물보호구, 10개의 해조(海鳥)번식보호와 수산자원보호구가 설정되어 있다. 백두산, 금강산, 묘향산을 비롯한 자연보호구는 세계적 명승지로서 널리 알려져 관광객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환경보호문제를 인류의 생존과 관련한 문제로 보는 국가는 지구의 온난화를 방지하는 일련의 과학기술적 대책도 강구하고 있다.9)”

이와 같은 북한의 노력은 국제적 차원에서 왕성하여 20여개의 국제환경조약에 가입하기에 이르고 있다. 특히, 1995년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환경과 개발에 관한 아시아 회의」에 참석한 북한의 사회과학원의 한 전문가는 반핵평화 및 생명운동을 주창하기도 하였다.10)

그러나 북한의 이러한 태도변화를 곧 북한의 환경보호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로서 받아들이기는 곤란하다. 무엇보다 환경문제와 관련된 북한의 산업구조 및 환경의식이 종전과 여전하다는 점과 환경보호 및 보전을 위한 법제화 수준이 매우 미흡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북한에서의 환경보호정책은 입법화단계보다는 운동차원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11)

9) 『朝鮮通信』, (주)朝鮮通信社, 東京, 1993. 6. 7. 8~9면.

10) 윤문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환경과 발전”, 배달환경 제40호, 1995.11. 18~24면.

11) 김창규, 북한의 환경보호법제, 한국법제연구원, 1995, 13면.

## II. 社會主義國家의 環境保護관련 立法動向

### (2) 環境保護關係法制的 沿革

북한을 비롯한 사회주의국가에서 환경보호 내지 환경오염의 문제는 그 사회적 관련성의 문제가 비교적 늦게 인식되어 이에 대한 체계적 이론의 전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북한은 한국전쟁과 전후복구사업, 중공업위주의 경제정책,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경제구조, 연료문제의 미해결로 인한 산림의 황폐화를 초래할 정도의 경제현실로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었다.<sup>12)</sup>

북한의 환경보호관계법제는 1986년 4월 9일 최고인민회의에서 「환경보호법」이 채택되기 이전까지는 자연환경보호에 관하여는 1977년의 「토지법」, 생활환경보호에 대하여는 1980년의 「인민보건법」에 부분적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다만, 천연자원의 보전과 문화재보호차원에서 1946년의 「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 「보물·고적천연기념물보존령시행규칙」(1946.4.29), 「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시행수속」(1946.4.29), 1948년의 「물질문화유물보존에관한규정」 등에 환경보호관계규정이 일부 산재되어 있었으며, 그 밖에 1946년 「오물청소규칙」이 임시인민위원회 보건국 지령(指令)으로서 토지건물의 사용자 또는 관리자의 오물청소의무, 건물소유자의 배수로 설치 및 수리 의무 등을 규정한 관련법령이 있었다.

특히, 「오물청소규칙」은 1961년에 제정된 우리나라의 「오물청소법」(1961.12.30)과 매우 유사한 내용과 법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이 그 특징이다.

북한에서 환경정책의 전개는 1986년 4월 6일 「환경보호법」을 채택, 법제화되고 1992년에 제정된 헌법 제57조에 명문화되면서 본격화되었다.

## 2. 베트남의 環境관련 立法

### (1) 베트남 立法體系의 特徵

베트남 법규범체계는 기본적으로 대륙법계에 속하며 프랑스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았다.<sup>13)</sup>

12) 세종연구소(편) 북한법의 체계와 특색, 1994, 642면.

13) Dinh Xuan Thang-Pham Van Hung, Phap Luat Hoc Dai Cuong(법률학 개론), 교육출판사, 1998, 74p. 이하 참조.

베트남 법규범체계에서 헌법은 그 최고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하위의 법규범이 헌법과 충돌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베트남 헌법은 국회의원 제적 3분의 2이상으로 개정할 수 있다. 헌법보다 하위의 법규범으로 여러 가지 법규범 형식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법, 법령, 령, 의결, 결정, 의정, 지시와 통지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같은 형식이라도 그 법규범의 성립주체가 무엇인가에 따라 효력의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국회의 의결과 정부의 의결은 그 효력에서 차이가 있다. 이하에서는 제정주체와 관련하여 각종 법형식과 그 규범력의 우열에 관하여 간략하게 살펴본다.

법은 國會가 憲法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법은 헌법 다음으로 가장 높은 규범력을 가지고 있다.

國會의 議決은 국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국회가 발하는 규범이다. 省의 분할에 관한 국회의 議決(헌법 제84조제8항)이 그 예이다.

國會常任委員會의 법령과 의결은 국회가 공포한 법규범 보다 하위의 규범력을 가진다. 국회상임위원회는 국회상임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할 수 있다. 각급 인민위원회나 인민회의의 선거기관에 관한 의결이 그 예이다.

國家主席은 령을 통하여 헌법, 법과 법령을 공포한다. 또한 국가주석의 권한에 속한 사항에 대하여 결정을 발한다.

政府는 議決과 議定을 발하고 政府首相은 決定과 指示를 발한다. 정부와 정부수상이 발하는 각 법규범은 국회상임위원회의 법령과 의결보다 하위의 효력을 갖는다.

각 부장관과 부급 기관이나 정부산하기관의 長이 발하는 決定, 指示와 通知는 정부와 정부수상이 발하는 법규범보다 하위의 효력을 갖는다.

人民最高法院의 대법관회의는 의결을 발하고 人民最高檢察院의 院長은 결정, 지시, 통지를 발한다.

국가기관들이나 정치사회조직은 그 권한의 범위내에서 議決이나 連席通知를 발할 수 있다.

각급 人民議會는 그 지방의 권력기관으로 자신의 권한범위 내에서 議決할 수 있으며 그 의결의 효력은 그 지역에 한정된다. 또한 중앙국가기관의 법규범과 상급 인민회의나 인민위원회의 의결에 부합하여야 한다.

각급 人民委員會와 인민위원회의 主席은 상급 국가기관과 상급인민회의의

## II. 社會主義國家의 環境保護관련 立法動向

법규범을 시행하기 위하여 또 그 지역의 국가관리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결정과 지시를 발할 수 있다.

### (2) 環境保護法制의 沿革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은 이른바 도이머이(刷新)<sup>14)</sup>라고 불리는 개방·개혁 정책을 실시한 이후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경제발전의 근저에는 외국자본의 도입, 즉 외국인투자가 깊이 자리잡고 있다. 베트남은 외국인투자의 장려를 위하여 외국인투자관련법규를 제정, 수 차례 개정하여 왔으며<sup>15)</sup> 1996년 11월에는 외국인투자법을 전면 개정하여 그동안 외국인 합작투자자들에게 제약요인이 되어왔던 이사회만장일치제, 투자형태, 투자절차, 외화사용조건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였다.<sup>16)</sup>

베트남 역시 우리 인류가 심각하게 직면하고 있는 환경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특히 오랜 전쟁과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환경파괴의 정도는 심각해지고 있다. 1992년 헌법에서는 환경권과 환경보호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각종 환경관련법령들을 공포·시행하고 있다.

경제발전과 환경보호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상충된다. 이의 조화점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持續可能한 發展'의 개념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베트남 역시 경제발전과 환경보호의 문제를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 도입을 통하여 그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베트남내의 모든 투자프로젝트는 일정한 환경규제를 받는다. 외국인투자프로젝트도 예외일 수 없으며 환경관련 법적규제를 준수하여야 한다.

## 3. 舊 社會主義國家의 環境保護관련 立法

마르크스주의에 있어서는 자연과 인간간의 물질대사과정(물질교환과정)에 관한 한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은 이를 철저히 파괴하고 착란하는 것으로 인식하여 이 파괴된 교환과정을 인간이 의식적으로 재편할 객관적 필요성을 역설

14) 도이머이(Doi Moi)를 직역하면 새로운 생활이라는 의미이다.

15) 1987년 처음 외국인투자법이 제정된 이후, 1990년 1차개정되었고 1992년 2차개정을 거쳐, 1996년 3차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16) 외국인투자법의 개정내용은 한국수출입은행, 베트남투자가이드, 1997.6. 1면 이하 참조.

하고 있다.<sup>17)</sup> 이러한 사회주의국가권의 환경관(環境觀)은 1960·70년대에 제정된 구동구권의 신헌법들에 일찍이 반영되어 있다.<sup>18)</sup>

1960년의 체코슬로바키아 사회주의공화국헌법 제15조제2항은 “국가는 인민 복지의 가장 풍부한 원천과 근로자의 건강강화, 휴식에 바람직한 조건을 만들어 내기 위하여 자연의 개선과 그 전면적 보호, 조국의 아름다운 자연보전에 대하여 배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1968년의 독일민주공화국헌법 제15조 제1항·제2항은 “독일민주공화국의 토지는 최종적으로 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지 않으면 안된다. 농지 및 산림은 그것에 대한 권한있는 기관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있다.”, “시민의 복지를 위하여 국가와 사회는 자연보호에 대하여 배려한다. 물 또는 대기의 청결유지, 동식물계 및 조국의 아름다운 경치보호는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보장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은 각 시민의 임무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971년의 불가리아 인민공화국헌법은 “토지는 기본적인 천연자원 및 생산 수단으로서 보호되고, 사회에 따라 가장 유익한 형태로 이용된다(제30조제1항).”, “자연 및 천연자원·물·대기·토양, 문화적 기념물의 보호·보전은 국가기관·국유기업·협동조합·사회단체의 의무이고, 모든 시민의 책무이다(제31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1972년의 개정 헝가리 인민공화국헌법은 “헝가리인민공화국에 있어서 시민은 생명·신체의 보전 및 건강의 보호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를 헝가리인민공화국은 노동보호·보건시설·의료서비스 및 인간환경의 보호를 조직함에 의하여 보장된다(제57조제1항·제2항).”, “헝가리인민공화국 시민의 기본적인 의무는 인민재산의 보호, 사회적 소유의 강화, 헝가리인민공화국의 경제력 강화, 자기 자신의 교육수준 향상, 국가 천연자원의 부 및 문화재의 보호, 사회체제의 강화이다(제69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1974년의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공화국연방헌법 제87조는 “근로인민, 시민, 연합노동조직, 사회적 정치적 공동체, 지방적 공동체 및 기타의 자치단체는 인간환경의 천연·인공의 가치보전과 개선을 위한 조건을 보장하고, 대기·토양·물의 오염, 소음과 대기·토양·물의 가치를 떨어뜨려서는 안되며,

17) 生野一路, “ソ連邦における自然保護と資源利用”, 社會主義研究會編, 『社會主義國における自然保護と資源利用』, 法律文化社, 社會主義法研究年寶 No. 3(1975), 1~2면.

18) 稻子恒夫, “社會主義諸國における自然保護法”, 社會主義研究會編, 『社會主義國における自然保護と資源利用』, 法律文化社, 社會主義法研究年寶 No. 3(1975), 1~2면.

## II. 社會主義國家의 環境保護관련 立法動向

인간의 건강·생명을 위협하는 유사한 것을 방지 또는 제거할 권리와 의무를 갖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구사회주의국가권의 자연보호 내지 환경관은 모든 천연자원의 국유화를 당연시하고 자연을 사회화된 인간과 결합한 생산성제고의 측면에서 접근한 나머지 오늘날 구사회주의국가권의 환경실태는 오히려 낙후되어 있는 실정이다. 즉, 자연보호가 자연이용으로 전락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다.

구사회주의국가권 가운데 중국과 북한의 경우 구동구권과는 달리 환경보호 관련법제의 입법이 취약한데, 이는 동양사회의 비법(非法)적 접근이라는 입법 관행 외에 구동구권의 사회주의혁명이 공업화된 유럽사회를 배경으로 한 반면 중국과 북한은 아시아적 생산양식<sup>19)</sup>이 지배하는 농경사회를 그 배경으로 한 점에서 연유한 듯하다.

---

19) 자세한 내용은 L.Kolakowski, 『Current of Marxism』, 박상철 역, 『콜라코프스키의 마르크스주의 I』, 훈겨레, 1989, 540면 이하를 참조.



### Ⅲ. 北韓과 베트남의 環境保護法制分析

#### 1. 環境保護法制的 構成

##### (1) 北韓의 環境保護法制

##### 1) 環境保護法の 構成

1986년에 제정된 「환경보호법」은 북한의 환경보호관계법제의 기본법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제1장 「환경보호의 기본원칙」, 제2장 「자연환경의 보존과 조성」, 제3장 「환경오염방지」, 제4장 「환경보호에 대한 지도관리」, 제5장 「환경피해에 대한 손해보상 및 제재」 등 총 8장 51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우리나라 환경법제의 기본법에 해당되는 「환경정책기본법」(1990.8.1)이 제1장 「총칙」, 제2장 「환경보전계획 수립 등」, 제3장 「법제 및 재정상의 조치」, 제4장 「환경보전위원회·환경보전자문위원회·환경보전협회」, 제5장 「보칙」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과는 입법방식에 있어서 매우 대조적이다.

환경법제의 입법방식은 크게 모든 사항을 하나의 법률에 총괄적으로 규정하는 단일법형태와 오염매체별 또는 규제대상별로 여러 개의 독립된 법을 제정하는 복수법 형태로 구분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복수법형태를 취하고 정부가 주도하는 개발도상국의 경우는 대체적으로 단일법형태를 취하고 있다.<sup>20)</sup> 북한의 경우 아직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과 법제 수준이 개발도상국 형태이어서 복수법형태를 택하고 있는 우리와는 대조적으로 「환경보호법」이라는 단일법형태를 취하고 있다.

다만, 토지·산림자원 등과 같은 자연환경에 관하여는 이 법 제9조에서 「토지법」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경우도 「토지법」이 토지·산림자원 등과 같은 자연환경에 대한 본격적인 개별환경보호법제라기 보다는 북한의 토지정책에 관한 규정인 「토지법」중 관련법령에 불과할 뿐이다.

##### 2) 環境保護의 基本原則

북한의 「환경보호법」은 제1장 「환경보호의 기본원칙」에서 국가의 역할(제1

20) 김창규, 「환경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본』, 1994, 77면.

### Ⅲ. 北韓과 베트남의 環境保護法制分析

조 내지 제4조, 제6조), 인민의 의무(제5조), 반핵주의(제7조), 환경정책의 주체화(제8조), 적용범위(제9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 ① 국가의 역할

북한의 「환경보호법」은 ‘환경을 보호하는 사업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항구적으로 틀어쥐고 나가야 할 중요한 사업’으로 규정짓고 조선노동당의 영도 밑에 경제발전예 따른 환경대책을 따르며 이에 대한 투자를 계속적으로 늘이는 것을 국가의 역할로 정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역할로서 환경보호 관리사업의 계획적 전망, 산업시설의 재배치, 공해방지대책의 수립, 환경보호 과학기관에 대한 지도강화 등을 명문화하고 있다.

#### ② 인민의 의무

북한의 「환경보호법」은 환경을 보호관리하는 것을 전체인민의 신성한 의무로서 천명하고 인민이 조국의 강산과 향토를 사랑하는 사회주의, 애국주의 교양사업들을 국가로 하여금 강력히 추진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 ③ 반핵주의

북한의 「환경보호법」은 제7조에서 “핵무기, 화학무기의 개발과 시험, 사용을 금지하며 그로 인한 환경피해를 막는 것은 세계인민들의 한결같은 지향이며 요구이다”라고 규정하고, 환경정책의 반핵주의를 선언함과 아울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 핵무기, 화학무기의 개발과 시험, 사용으로 나라의 환경이 파괴, 오염되는 현상을 반대하여 투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북한법을 분석할 때 가장 많은 곤란을 겪는 ‘북한법의 무규범성(無規範性)’ 현상으로서 북한법제분석을 통한 북한현실의 파악이라는 법분석의 제1차적 목적성을 상실케 하는 규정이다. 핵무기 개발과 시험, 사용 등을 전제로 한 최근 북한 행정채을 감안할 때 「환경보호법」 제7조의 규정은 단순한 선언적 규정을 일탈한 정치적 선전규정으로 볼 수밖에 없다.

#### ④ 환경정책의 국제화

「환경보호법」은 환경정책의 국제화를 지향하는 의미에서 제8조에서 “국가는 우리 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환경보호분야에서 과학기술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⑤ 적용범위

「환경보호법」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제9조에서 이 법은 “대기와 물, 토양, 생

물을 비롯한 환경을 손상, 파괴 및 오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원칙과 질서를 규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법에서 규제하지 않은 토지와 산림자원을 비롯한 자연환경을 꾸리고 보호관리하는 질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토지법」(1977)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 3) 自然環境의 保存과 造成

북한의 「환경보호법」 제10조 내지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우리나라 「자연환경보전법」(1991.12.31)에 해당되어 다양한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고 보호할 가치가 있는 생물종(生物種)의 멸종을 방지하는 「자연환경보전법」의 입법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갖는 규정들이다. 북한의 「환경보호법」은 자연환경을 국가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정부원에서 정하는 '자연환경보호구'와 '특별보호구'를 두고 국토관리기관과 자연보호과학기관, 지방정권기관은 자연환경보호구와 특별보호구에서 동식물의 변화, 지형과 수질의 변화, 기후변동을 비롯한 자연환경의 변화상태를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등록하며 필요한 보호관리대책을 세우도록 하고 있다.

「환경보호법」은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환경보호구와 특별보호구 안에서는 자연환경을 원상대로 보존하고 철저히 보호관리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는 대원칙을 세우고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에 대하여 다음의 금지행위를 정하고 있다.

-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은 도시와 마을, 도로와 철길 주변, 호수가와 강변의 풍치림을 베거나 명승지와 바다기슭의 솔밭, 해수욕장, 기암절벽, 우아하고 기묘한 산세, 풍치좋은 섬을 비롯한 자연풍치를 손상, 파괴하지 말아야 함.
-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은 명승지와 관광지, 휴양지에 탄광, 광산을 개발하거나 환경보호에 지장을 주는 건물, 시설물을 짓는 것과 같은 행위를 하지 말며 동굴, 폭포, 옛 성터를 비롯한 천연기념물과 명승고적을 원상대로 보존하여야 함.
- 기관, 기업소, 단체는 지하자원을 개발하거나 지하건설을 할 때 땅이 꺼져 환경이 파괴되지 않게 미리 해당한 대책을 세워야 하며, 땅이 꺼져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곳에서는 지하수를 뽑아 쓸 수 없음.
-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르는 날짐승과 길짐승은 잡을 수 없으며 우리

### Ⅲ. 北韓과 베트남의 環境保護法制分析

나라에만 있거나 리로운 야생동물과 수중생물은 해당 환경보호감독기관의 허가없이 잡거나 뜯을 수 없으며, 모든 국민은 야생동물과 수중생물의 서식환경을 못쓰게 만들거나 희귀한 식물을 마구 캐어 생물계의 균형을 변화시키며 근로자들의 문화정서생활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함.

- 도시관리기관과 지방행정 및 경제지도기관은 공원과 유원지를 비롯한 문화휴식터를 곳곳에 꾸리며 도로, 철길, 건물 주변과 구획안의 빈땅이나 공동이용장소에 나무나 잔디를 심어 녹지면적을 늘여야 하며, 도시 안과 그 주변에는 환경조성에 지장을 주는 나무를 심을 수 없음.
-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국민은 정상적으로 향토를 꾸리는 사업에 참가하여야 하며 식수월간, 도시미화월간을 계기로 이 사업을 집중적으로 하여야 하며, 도시와 마을에서 건물과 시설물을 짓는 것과 같은 작업을 할 때에는 주변환경을 어지럽히지 말아야 함.

#### (2) 베트남의 環境保護法制

##### 1) 環境保護法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베트남은 환경보호 법제를 정비하였다. 1992년 베트남헌법 제29조는 국가기관, 군부대, 경제조직, 사회조직과 모든 개인은 천연자원의 합리적인 이용과 환경보호에 관한 국가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하여 環境保護義務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현행 환경보호법이 1993년 12월 27일 국회를 통과하여 1994년 1월 10일 공포되었다. 환경보호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도 수산자원보호법령, 광산자원보호법령, 산림보호법령, 산림보호·발전법, 토지법, 건강보호법령 등이 시행되고 있었다.<sup>21)</sup>

환경보호법은 총7장, 55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환경보호법의 내용을 개관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제1장은 총칙규정들, 즉 목적(제1조), 정의(제2조), 국가의 통일적 관리 및 계획수립의무와 환경보호장려의무(제3조), 국가의 교육·훈련, 과학·기술연

21) Duong Thanh Mai 등, Phap Luat Chuyen Nganh, 교육출판사, 1998, p.72이하 참조.

구 등의 의무(제4조), 국가의 천연자원과 환경에 관한 국익보호의무(제5조), 내·외국인 및 내·외국조직의 준수 의무(제6조), 환경이용자의 재정부담 및 손해배상의무(제7조), 국회·인민의회·베트남 조국전선 및 그 산하 조직의 환경보호규정의 시행 및 감독·통제의무(제8조), 환경침해금지의무(제9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2장은 환경사고·환경오염·환경악화방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국가기관은 환경현황을 조사·연구·평가하며 환경현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환경오염지역 확인 및 공표, 방지계획수립 및 환경오염방지 및 환경악화 방지의무를 부담한다(제10조). 또한 국가는 합리적인 환경개발과 이용 및 선진기술 및 청정기술도입, 쓰레기재활용, 자원절약 등을 장려하여야 한다(제11조). 조직과 개인도 환경보호의무를 부담한다(제12조). 제13조 내지 제29조까지는 각 영역에서의 환경보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즉 제13조에서는 자연보존지역의 개발, 제14조에서는 농지, 산림의 개발, 제15조에서는 수자원개발, 제16조에서는 생산과 경영에서의 환경기준준수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제17조 내지 제18조에서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제19조는 수출·입상의 환경규제를, 제20조는 지하광물과 지하수에 대한 환경규제를, 제21조에서는 석유·가스에 대한 환경규제를, 제22조에서는 각종 교통수단에 대한 환경규제를, 제23조에서는 독극물, 인화물질 및 폭발물에 대한 환경규제를, 제24조에서는 각종 원자력시설물에 대한 환경규제를, 제25조에서는 전자기시설에 관한 환경규제를, 제26조에서는 폐기물·폐수·독극물 처리에 관하여, 제27조에서는 묘지, 화장장 등에 관하여, 제28조에서는 소음·진동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29조에서는 금지되는 행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환경사고·환경오염·환경악화의 구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즉 환경오염 등을 유발한 조직과 개인의 구제조치의무와 손해배상의무(제30조), 방사능사고시의 즉시 조치의무와 보고의무(제31조), 환경사고구제내용(제32조) 및 환경사고발견자의 신고의무, 조치의무 및 보고의무(제33조), 각급 국가기관의 권한(제34조 내지 제36조) 등이 규정되어 있다.

제4장에서는 환경보호에 대한 국가관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국가관리의 범위(제37조), 권한의 위임(제38조 내지 제39조), 환경보호조사반 및 조사원의 권한과 조사사의 협조의무 등도 규정되어 있다(제40조 내지 제42조).

### Ⅲ. 北韓과 베트남의 環境保護法制分析

환경보호조사반 및 조사원 또는 국가기관의 환경위반에 관한 처분의 불복(제 43조)과 구제수단도 규정되어 있다(제44조).

제5장에서는 환경보호에 관한 국제관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6장에서는 환경규제 위반에 관한 보상과 위반처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7장에서는 시행규정들이 규정되어 있다.

#### 2) 環境保護法施行에 관한 政府議定

환경보호법의 시행을 위하여 각종 법규들이 제정·공포되어 시행되고 있다. 환경보호법의 시행을 위하여 1994년 10월 18일 175-CP 정부의정이 공포되었다. 이 의정은 환경보호에 관한 법규들을 시행하는 조직과 환경기준체계를 규정하고 있다.

#### 3) 環境影響評價

1998년 4월 29일 '490/1998/TT-BKHCMNT 투자프로젝트의 환경영향평가보고의 작성과 심사에 관한 통지'가 공포되었다. 이 통지는 1997년 8월 20일의 1100/TT-MTg 투자프로젝트의 환경영향평가보고의 작성과 심사에 관한 통지를 대체한 것으로 과거 3분하던 평가대상프로젝트를 2분하였으며, 그 절차도 간소화하였다.

환경기준확인증 발급 수수료와 절차에 관하여는 1998년 5월 13일 60/1998/TT/BT/C 통지가 있다.

환경영향평가기관의 조직, 권리와 관할에 관하여는 1994년 12월 12일 1485MTg 통지가 규율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의 사후관리에 관하여는 1997년 3월 6일 '276/TT-MTg 환경영향평가보고서승인발급 후 생산과 경영상의 오염통제에 관한 과학-기술-환경부통지'가 규율하고 있다.

#### 4) 環境保護行政違反處罰

환경보호규정 위반시 이에 대한 처리에 관하여는 1996년 4월 26일 '26/CP 환경보호 행정위반의 처벌규정에 관한 정부의정'이 시행 중에 있다. 이 의정의 시행을 위하여 '26/CP 환경보호 행정위반의 처벌규정에 관한 정부의정시행을 위한 과학-기술-환경부의 2433/TT-KCM통지'가 역시 시행 중에 있다.

5) 環境基準 및 기타 法規

베트남의 환경기준은 1996년 12월 21일 '과학-기술-환경부의 2920/D-Tg 결정'에 규정되어 있다. 이 결정은 모두 97개 환경기준이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문제되는 각 영역에 관한 법규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법규에서 다른 환경기준들이 제시되고 있다. 예를 들어 건축과 생산에 있어서의 석면사용규제에 관하여는 1998년 10월 17일 과학-기술-환경부와 건설부의 1529/1998/TTLT 연석통지가 적용된다. 또한 석유의 탐사·개발 등에 관하여는 1998년 4월 10일 과학-기술-환경부의 395/1998/QD가 규율하고 있으며 해상운송수단의 해양오염의 통제에 관하여는 1996년 11월 12일 과학-기술-환경부의 2592공문이 있다.

6) 環境基準

베트남환경기준이 우선 적용됨은 물론이다. 베트남환경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국제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일정한 제한이 존재한다. 베트남환경기준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sup>22)</sup>

①토지보호환경기준, ②수질보호환경기준, ③대기보호환경기준, ④소음규제환경기준, ⑤방사능 및 이온분야 환경기준, ⑥주거지환경기준, ⑦생산지역환경기준, ⑧산림보호지역환경기준, ⑨생물보호환경기준, ⑩생태계보호환경기준, ⑪해양보호환경기준, ⑫자연보존지역 및 자연경관보호환경기준, ⑬산업계획·도시계획·민간건축 분야 환경보호기준, ⑭독극물 및 방사능물질 사용·저장·운송에 관한 환경기준, ⑮광물탐사에 관한 환경기준, ⑯교통수단에 관한 환경기준, ⑰미생물사용에 관한 환경기준, ⑱관광지환경보호환경기준, ⑲수출·입에 관한 환경기준, ⑳병원 및 특정 질병치료시설에 관한 환경기준

과학-기술-환경부는 상기 목록에 관한 기준을 공포하는데 있어 관련 부처 및 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또한 1996년 12월 21일 '과학-기술-환경부의 2920/QD-MTg결정'은 모두 97개 환경기준목록을 규정하고 있다.

22) 1994년 10월 18일 환경보호법의 시행을 위한 175-CP 정부의정. 제22조 참조.

## 2. 環境汚染·環境惡化의 防止 및 救濟

### (1) 北韓의 環境汚染防止

북한의 「환경보호법」은 제3장에서 환경오염방지에 관하여 일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환경보호관계법제가 환경보전과 폐기물관리 등에 있어서 개별입법주의를 택하고 있는 것과는 크게 비교되는 부문이다.

「환경보호법」은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을 공해방지의 선결조건으로 천명하며 정무원으로 하여금 환경보호한계기준과 오염물질의 배출기준 및 소음·진동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환경오염의 규제대상으로는 대기오염, 물오염(해양오염 포함), 농약오염, 방사성물질오염, 소음·진동공해 등을 규정하고 있다.

#### 1) 대기오염방지책

「환경보호법」이 정하고 있는 대기오염방지책은 다음과 같다.

- 해당 기관, 공장, 기업소는 대기오염을 막기 위한 가스, 먼지잡이 장치와 건물과 시설물에서 나는 냄새를 가시기 위한 공기력과 장치를 갖추며 로와 탱크, 배관을 비롯한 시설들을 계획적으로 보수·정비하여야 하고, 지방행정 및 경제지도기관은 해당 공장, 기업소와 주민구역 사이에 위생보호구역을 정하고 거기에 원림을 조성하여야 한다.
- 가스, 연기를 기준보다 더 내보내는 룬전기재와 포장하지 않은 물자를 실어 먼지를 일으킬 수 있거나 어지러워진 룬전기재는 운행할 수 없으며 규정된 기준을 초과하여 소음과 진동을 일으키는 기계설비는 자동할 수 없고, 사회안전기관과 통운감독기관, 지방정권기관은 주요 거리와 필요한 지역에 현대적인 배기가스 측정수단을 갖추며 룬전기재의 가스, 연기 배출상태를 검증하며 대기오염을 막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 해당 기관, 공장, 기업소는 배출되는 가스, 먼지, 연기가 특수한 기상조건으로 대기를 심히 오염시켜 사람 또는 짐승에게 해를 줄 수 있을 때에는 그 배출량을 줄이며 룬전기재의 운행을 조절하거나 중지하여야 하며, 기상수문기관은 특수기상현상을 해당 기관에 제때에 통보하여야 한다.



2) 물오염(해양오염 포함)방지책

「환경보호법」이 정하고 있는 물오염(해양오염 포함)방지책은 다음과 같다.

- 기관, 기업소, 단체는 물오염을 막기 위한 침전지와 정화시설을 갖추고 생활오수와 여러 가지 버릴 물을 정화하며 그것을 회수, 리용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 도시관리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상수도시설을 정상적으로 보수정비하며 먹는 물을 잘 려과 소독하여 공급하여야 하고, 취수구와 저수지, 배수구 주변에는 공장, 기업소와 건물, 시설물을 지을 수 없으며 살초제, 살충제를 비롯한 해로운 화학물질을 칠 수 없다.
- 모든 배들은 공화국령해, 경제수역과 항만, 포구, 갑문, 강하천, 호소, 저수지에서 항행하거나 정박하고 있을 때 기름과 오수, 오물을 버리거나 떨구지 말아야 하며, 자원개발기관과 지방행정 및 경제지도 기관, 해당기관은 바다자원을 개발하거나 해안공사를 할 때 바다환경을 오염시키지 말아야 한다.
- 배 운영기관은 배에다 톤수에 따르는 오염방지설비 또는 오수, 오물저장용기를 갖추고 해사감독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해사감독기관은 배에 환경보호시설을 갖춘 정형을 엄격히 검사하여야 한다.
- 항과 포구, 갑문, 부두를 관리운영하는 기관, 기업소, 협동단체는 오수와 오물처리시설을 갖추고 배의 오수와 오물을 실어내며 바다물과 강물에 떨어진 기름과 오물을 정화하거나 거두어내야 한다.
-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활오수와 여러 가지 버릴 물의 침전지, 정화장과 오물, 공업 폐설물의 처리장을 바다, 강하천, 호소, 저수지와 먹는 물 원천을 오염시키지 않을 곳에 정하여야 하고, 박토장<sup>23)</sup>, 버력장<sup>24)</sup>, 저탄장<sup>25)</sup>, 연재 및 광재 처리장은 주변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꾸리며 다 리용한 뒤에는 흙을 덮어 나무를 심거나 농경지로 리용하여야 한다.

23) 박토장은 "광산이나 탄광에서 박토작업(깊지않은 지하유용광물을 채취하기 위하여 로 천체굴장에서 땅결면층을 파제끼는 일)을 하는 곳"을 의미한다. 조선말대사전1, 사회과학출판사(평양), 1992, 1287면.

24) 버력장은 "버력(광산이나 탄광에서 쇠돌이나 석탄을 켤 때 나오는 쓸모없는 잡돌이나 잡것)을 내다 부리우는 곳"을 의미한다. 위의 책, 1360면.

25) 저탄장은 "석탄을 저장하여 두는 마당 또는 그런 장소"를 의미한다. 조선말대사전, 사회과학출판사(평양), 1992, 113면.

### Ⅲ. 北韓과 베트남의 環境保護法制分析

#### 3) 농약오염방지책

「환경보호법」이 정하고 있는 농약오염방지책은 다음과 같다.

- 대기, 물, 토양을 오염시키거나 인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국가적으로 금지된 농약은 생산하거나 수입할 수 없으며, 농약에 대한 독성검사는 위생방역기관이 한다.
- 농업지도기관과 농약을 쓰는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은 농약이 공기 중에 날리거나 강하천, 호소, 저수지, 바다에 흘러들지 않게 하며 땅속에 농약이 축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살충제를 비롯한 농약을 비행기로 뿌리려고 할 때에는 해당 환경보호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4) 방사능물질오염방지책

「환경보호법」이 정하고 있는 방사능물질오염방지책은 다음과 같다.

- 방사성물질을 생산하거나 취급하는 기관, 공장, 기업소는 방사성기체, 먼지, 버릴 물, 폐설물에 의하여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려과시설과 정화시설을 갖추고 방사능농도를 배출기준 아래로 낮추어야 하며, 개방상태의 방사성물질을 일상적으로 취급하는 기관, 공장, 기업소는 주위 환경에 대한 방사성오염준위를 정상적으로 조사측정하여 오염피해를 미리 막아야 한다.
- 방사성물질을 생산, 공급, 운반, 관리, 사용 및 폐기하는 기관, 공장, 기업소는 방사선감독기관 또는 사회안전기관의 방사성물질취급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하며, 방사선감독기관은 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요소들을 정상적으로 조사하고 해당한 대책을 세우도록 하여야 한다.

#### 5) 소음·진동공해방지책

「환경보호법」이 정하고 있는 소음·진동공해방지책은 다음과 같다.

- 해로운 물질을 내보내거나 소음과 진동을 일으켜 사람들의 건강과 환경에 해를 주는 설비와 기술을 수입하거나 생산에 도입할 수 없다.
-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산과정에 생기는 해로운 물질의 배출량과 농도, 소음과 진동의 세기를 정상적으로 측정하고 계통적으로 낮추며 해당 환경보호감독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환경보호감독기관의 허가가 없거나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해로운 물질은 내보낼 수 없다.

6) 기 타

이외에 수입규제와 공장지역배치 및 국가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각각 제34조의 “오염된 물고기, 과일을 비롯한 식료품과 짐짐승먹이는 수입할 수 없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은 식료품을 생산하거나 취급하는 과정에 그것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와 제37조의 “지방정권기관과 국토관리기관, 해당기관은 주민들의 건강에 해를 주는 공장, 기업소를 도시 밖으로 내가며 화물수송 도로와 철길을 주민구역 밖으로 돌리거나 지하에 넣어야 한다. 오염피해를 받는 살림집은 생활환경이 좋은 곳으로 옮겨야 한다. 도시의 중심에는 공해를 일으킬 수 있거나 물동량이 많은 공장, 기업소를 건설할 수 없으며 공해막이시설을 갖추지 않은 건물,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다.”의 규정을 두고 있다.

그리고 쓰레기처리와 관련하여 나뭇잎과 오물을 도시주민구역과 주요도로 주변에서 불태우지 말고 정해진 곳에 모아 처리하되 도시관리기관과 해당기관이 수시로 운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최근에 실시되고 있는 우리의 쓰레기종량제와는 판이한 생활상을 보여주고 있다.

(2) 베트남의 環境事故·環境汚染·環境惡化의 防止 및 救濟

환경사고·환경오염·환경악화를 야기한 조직과 개인은 그 구제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또한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sup>26)</sup> 환경사고를 발견한 자는 즉시 지방 인민위원회나 가장 가까운 국가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사고가 발생한 지역의 조직과 개인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상급 행정기관이나 가장 가까운 인민위원회, 환경보호관리국가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환경사고가 발생한 지역의 인민위원회 주석은 구제조치를 위하여 인적·물적 자원의 동원령을 발할 수 있다. 환경사고가 수 개 지역에 걸쳐 발생한 경우 각 인민위원회의 주석들은 구제조치를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환경사고가 지역적 구제능력의 범위를 초과하는 특별히 중대한 환경사고의 발생시 과학-기술-환경부 장관은 정부수상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긴급조치를 제안할 수 있다.

26) 환경보호법 제30조 참조.

### Ⅲ. 北韓과 베트남의 環境保護法制分析

특별히 중대한 환경사고란 ①다수인의 생명과 재산, ②경제, 사회, 안전, 국방시설, ③광범위한 지역, ④국제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에 중대한 손해를 가하는 사고를 말한다. 이런 특별히 중대한 환경사고의 경우 국방부장관과 내무부장관은 특별반을 조직하여 사고에 대처할 수 있다.

## 3. 環境保護管理 擔當機關

### (1) 北韓의 環境保護指導管理體系

「환경보호법」에서는 환경보호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행정조직 및 그 체계에 관하여 비교적 소상히 밝히고 있다. 이 법은 환경보호에 대한 지도관리체계를 크게 감독사업부문·조직지도사업부문·지도관리협조부문 등 세부분으로 나누고 있다.

첫째, 환경보호에 대한 조직지도사업부문에 있어서 통일적 지도는 조선노동당 영도하에 정무원이 주도하며 환경보호에 대한 집체적 주도를 보장하고 필요한 대책을 제때에 세우기 위하여 정무원산하 비상설 환경보호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이 비상설 환경보호위원회는 현재 국가환경보호위원회로 개칭하여 상설화되고 있다.<sup>27)</sup>

둘째, 환경보호에 대한 감독사업은 국토관리기관과 부문별 환경보호감독기관들인 위생방역기관, 방사선감독기관 및 해당 권한있는 기관이 하는데, 이 법에 규정된 각 기관의 구체적 담당업무는 다음과 같다.

#### ① 해당 중앙기관과 국토관리기관, 지방정권기관

환경의 손상과 오염상태를 전반적으로 조사하고 년차별계획을 세워 환경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함.

#### ② 국토계획기관과 해당 설계심사기관

환경보호의 요구에 맞게 기상수문조건과 지형조건, 해양조건 같은 것을 따져보고 주민지구와 산업지구를 정하며 보건기관, 기상수문기관 및 해당전문기관과 합의한 기술과제와 설계에 대해서만 심사준비하여야 함.

27) 국가상설위원회는 1993년 6월 5일 「세계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UN에 지구환경변화와 민족적 임무를 강조한 서한을 보내면서 공개된 바 있으며(『노동신문』, 1993.6.4), 1인의 의장과 3인의 부의장 그리고 8개의 부로 구성되어 있다.

③ 준공검사기관과 준공검사에 참가하는 기관

공해막이시설을 갖추지 않은 기본건설대상에 대하여 준공검사합격승인을 하지 말아야 함.

④ 정무원

국가적인 공해감시체계를 세우고 공해감시측정기관들의 역할을 높여 환경변상태에 대한 측정사업을 정상적으로 하며 생활오수와 여러 가지 버릴 물, 공업폐설물을 처리하기 위한 과학기술적 대책을 세워야 함.

⑤ 교육기관과 출판보도기관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과학지식보급과 대중교양사업을 진행하며 환경보호분야에서 이룩한 성과를 널리 소개선전하여야 함.

셋째, 환경보호지도관리를 위한 협조부문에 대하여 이 법 제41조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감독 및 측정 사업과 관련하여 환경보호감독기관과 환경보호측정기관이 요구하는 자료와 필요한 사업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자재공급기관, 재정은행기관, 로동행정기관은 환경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설비, 자재, 자금, 로력을 제때에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베트남의 環境保護管理擔當 國家機關

환경보호국가관리는 주무부처인 과학-기술-환경부가 담당하며, 同部 내에는 環境局이 있다. 또한 각 부 및 정부산하 부급 기관은 그 기능에 따라 환경보호에 관한 국가관리의 업무를 담당한다. 그리고 각 부 및 정부산하 부급 기관은 일정한 활동에 있어서 과학-기술-환경부와 협의하여야 한다.

각 省과 중앙직속시의 인민위원회 역시 환경보호에 관한 국가관리시행에 있어서 일정한 책임을 부담한다. 또한 科學-技術-環境所는 각 省과 중앙직속시의 인민위원회에 대하여 환경보호에 관한 국가관리시행에 책임을 부담한다. 각 국가기관과 인민단체들도 일정한 책임을 부담한다. 모든 생산과 경영조직이 법규범을 준수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이하에서는 각 행정기관의 국가환경보호관리업무 분장에 관하여 행정기관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검토하고자 한다.

### Ⅲ. 北韓과 베트남의 環境保護法制分析

#### 1) 科學-技術-環境部

과학-기술-환경부는 국가환경보호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주무부처이다. 과학-기술-환경부의 환경보호에 관한 업무는 다음과 같다.<sup>28)</sup>

- ① 환경보호에 관한 법규 제안 및 제정
- ② 환경보호를 위한 정책과 전략수립
- ③ 환경보호와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장기 및 연차계획 수립·제안권
- ④ 환경연구체제건설
- ⑤ 전국의 환경현황파악 및 국회에의 정기적인 보고
- ⑥ 일정한 프로젝트에 관한 환경영향평가보고서의 승인
- ⑦ 연구 및 환경분야에서의 선진과학기술적용지침제공
- ⑧ 환경보호법을 시행하는 기타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조직과 개인의 지도·감독
- ⑨ 환경보호관련 국제기구나 조약에의 체결 제안

#### 2) 環境局

과학-기술-환경부 내의 환경국은 과학-기술-환경부 장관을 보조하며, 과학-기술-환경부 장관이 규정한 업무와 권한을 갖는다.

#### 3) 各 部 및 政府산하 部級 機關

각 부 및 정부산하 부급 기관은 그 권한내에서 환경보호에 관한 국가관리의 업무를 수행하며 권한을 갖는다. 각 부 및 정부산하 부급 기관의 업무 및 권한은 다음과 같다.

- ① 환경보호법의 규정에 부합하고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의 환경보호법규의 제안 및 전국환경보호의 기본정책과 전략에 부합하는 각자의 환경보호정책과 전략제시
- ② 직접 관리하의 기관에 대한 과학-기술-환경부의 지침에 부합하는 환경보호법의 시행과 계획의 수행의 지시·감독
- ③ 환경보호에 관련된 독자적인 프로젝트수행
- ④ 프로젝트의 환경영향평가보고서승인의 협력

28) 1994년 10월 18일 환경보호법의 시행을 위한 175-CP 정부의정 제4조 참조.

⑤ 권한내에서 환경보호위반처벌 및 분쟁처리  
각 부 및 정부산하 부급 기관은 과학-기술-환경부와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 ① 관할내의 환경현황에 대한 조사·관찰·연구·평가
- ② 관할내의 환경악화·환경오염·환경사고 처리방안 수행과 결정을 위한 대정부제안
- ③ 관할내의 환경보호분야에서의 선진과학·기술 연구 및 적용
- ④ 관할내의 환경보호법과 환경보호에 관한 지식의 교육·홍보

4) 各 省과 中央直屬 市の 人民委員會

각 성과 중앙직속 시의 인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환경보호국가관리수행의 책임을 진다.

- ① 관할지역내의 환경보호법규제정
- ② 관할지역내의 환경보호에 관한 국가 및 지역의 규범집행을 지시·감독
- ③ 일정한 프로젝트의 환경영향평가보고서의 승인
- ④ 환경기준등록증의 교부 및 회수
- ⑤ 관할지역내의 환경보호법 위반 조사·검사·처리상의 중앙기관과의 협의
- ⑥ 권한내의 환경보호에 관한 분쟁, 제안의 수리 및 처리

5) 地方 科學-技術-環境所

지방 과학-기술-환경소는 각 성과 중앙직속 시의 인민위원회에 대하여 그 관할지역내의 환경보호국가관리집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각 성과 중앙직속 시의 인민위원회가 규정한 지방 과학-기술-환경소의 권한과 업무는 과학-기술-환경부의 지침에 부합하여야 한다.

6) 各 國家機關 및 人民團體

각 국가기관과 인민단체는 환경보호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책임을 부담한다.

- ① 중앙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호에 관한 모든 법규범을 엄격히 집행
- ② 환경보호에 관한 국가기관 및 인민단체 구성원들의 책임감 고취를 위한 교육·홍보

- ③ 책임과 권한 범위내에서 환경보호법의 집행을 감시하고 환경보호법규위반을 발견하고 즉시 신고

#### 4. 環境保護違反에 대한 制裁

##### (1) 北韓의 環境被害에 대한 損害補償 및 制裁

북한의 「환경보호법」은 환경피해에 대한 구제 및 제재로서 손해보상, 손실보상<sup>29)</sup>, 원상회복, 억류, 벌금, 행정 및 형사적 책임 등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법적 책임의 내용과 절차에 대하여는 구체적 언급이 없다.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피해에 대한 손해보상 및 제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손해보상책임 : 환경을 손상, 파괴, 오염시켜 사람의 건강과 국가 및 사회 협동단체, 국민의 재산에 해를 끼친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국민은 그 손해를 보상하여야 함.
- 손실보상책임 : 환경보호질서위반으로 손해를 본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국민은 손해를 준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국민에게 손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음. 또한 환경보호질서를 어겨 국토와 자원에 피해를 주었을 때에는 환경보호감독기관이 해당 손실을 보상시킴.
- 억류·벌금·손해보상책임 : 환경보호 감독기관과 해당 권한있는 기관은 다른 나라의 배 또는 사람이 우리나라의 령토와 경제수역에서 대기와 물을 오염시켰을 때에는 해당 배 또는 사람을 억류하며 손해를 보상시키거나 벌금을 물림.
- 원상회복·회수·행정 및 형사책임 : 환경보호감독기관은 환경보호질서를 어기고 진행하는 대상건설, 공장의 운영과 료전기재의 운영을 중지시키거나 해당 건물, 시설물을 철수시킬 수 있으며 위법행위를 하는데 쓴 물자 생산물을 회수하며 손상, 파괴, 오염된 환경은 심히 손상, 파괴, 오염시켜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일군과 책임있는 국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sup>30)</sup>을 지운다.

29) 우리나라의 현행법이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을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는 반면에 북한의 환경보호법은 「손해배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손해보상」 또는 「손실보상」이라는 용어를 함께 사용하고 있으며, 그 개념의 구별도 명확하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30) 현행 형법에서는 공해행위에 대하여 국토관리질서침해사범으로 규정하여 2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하고 있다(북한형법 제89조).



(2) 베트남의 環境保護行政違反에 대한 處罰

1996년 4월 26일 環境보호 행정위반의 처벌규정에 관한 26/CP 정부의정은 環境보호행정위반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의정의 시행을 위하여 '26/CP 環境보호 행정위반의 처벌규정에 관한 정부의정시행을 위한 과학-기술-환경부의 2433/TT-KCM통지'가 시행 중에 있다. 이하 1996년 4월 26일 環境보호 행정위반의 처벌규정에 관한 26/CP 정부의정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1) 環境保護行政違反 處罰의 一般原則

조직과 개인은 環境보호에 관한 국가관리원칙에 위반한 고의 또는 고의에 의하지 않는 행위(이하 環境보호에 관한 행정위반)에 대하여 행정처벌을 받는다. 즉 環境보호에 관한 행정위반 행위를 한 조직, 개인은 본 의정서 규정에 따라 처벌받는다. 또한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영토 내, 경제특구 및 대륙붕에서 環境보호 관한 행정위반 행위를 한 외국조직과 개인은 베트남이 체결 또는 참가한 국제조약에서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의정서 규정에 따라 처벌받는다. 모든 環境보호에 관한 행정위반 행위는 적기에 발견되고 즉시 중지되어야 한다. 처벌은 신속하고 공정하여야 하며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 행정위반으로 일어난 環境에 관한 결과는 규정에 따라 복구되어야 한다.

조직, 개인은 環境보호에 관한 행정위반 행위를 하여 가한 물적 손해에 대하여 법률의 규정에 따라 배상하여야 한다. 環境보호에 관한 행정위반으로 일어난 손해배상은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합의를 원칙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環境보호에 관한 행정위반으로 1,000,000동이하의 물적 손해를 가하고 합의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처벌관할권을 가진 사람이 배상액을 결정한다. 1,000,000 동 이상의 물적 손해는 민사소송절차에 따른다.

2) 管轄

각급 인민위원장은 관할지역내의 環境보호에 관한 행정위반처벌 관할권을 갖는다. 또한 과학-기술-환경부, 環境국 및 과학-기술-環境소는 권한의 범위 내에서 環境보호에 관한 행정위반 처벌관할권을 갖는다. 처벌관할권이 경합하는 경우 環境보호에 관한 행정위반의 처벌은 최초 수리한 기관이 한다.

### Ⅲ. 北韓과 베트남의 環境保護法制分析

#### 3) 環境保護에 관한 行政違反의 類型

환경보호에 관한 행정위반의 처벌형식은 벌금, 허가정지 및 박탈, 압수 등이 있다. 이 경우 허가정지 및 박탈 등은 벌금과 병과될 수 있다. 이하에서는 1996년 4월 26일 환경보호 행정위반의 처벌규정에 관한 26/CP 정부의정에 규정된 행정위반유형을 살펴본다.

- ① 환경오염방지 및 환경악화에 관한 위반(제6조)
- ② 생물다양성보호와 자연보존위반(제7조)
- ③ 농업 및 농촌개발부, 수산부가 공포한 목록에 포함되는 희귀동식물의 개발·거래위반(제8조)
- ④ 생산과 경영, 병원, 호텔, 음식점 영업상의 환경보호위반(제9조)
- ⑤ 환경보호관련 기술·설비, 유독화학물질, 위해제품, 수출입허가서에 관한 위반(제10조)
- ⑥ 폐기물 수출입에 관한 위반(제11조)
- ⑦ 석유·가스의 탐사, 조사, 개발상의 환경사고예방에 관한 위반(제12조)
- ⑧ 방사능물질에 관한 환경보호국가관리규정 위반(제13조)
- ⑨ 방사선사용에 관한 환경보호국가관리규정 위반(제14조)
- ⑩ 폐기물·폐수 운송, 처리에 관한 위반(제15조)
- ⑪ 토지오염에 관한 위반(제16조)
- ⑫ 소음·진동에 관한 위반(제17조)
- ⑬ 폭죽·폭약의 생산, 매매, 운송, 수입, 보관 및 파열에 관한 위반(제18조)
- ⑭ 환경사고 복구처리규정 위반(제19조)

#### 4) 處罰 및 不服節次

##### (가) 處罰節次

개인 및 조직의 행정위반에 대한 처벌형식은 경고, 벌금, 허가서 박탈, 행정위반에 사용된 물건 수단의 압수 등이다. 따라서 환경위반에 대한 처벌에도 이러한 형식이 적용된다.

환경보호관리상 행정위반 행위가 발견된 경우 처벌관할권자는 즉시 위반행위 중지명령을 내리고 위반한 조직, 개인에게, 위반한 법률조항, 책임정도, 가

중사유, 감경사유 및 그 위반행위에 대해 적용되는 처벌형식을 고지하여야 한다.

경고형식으로 처벌하는 경우 처벌관할권자는 현장에서 처벌을 결정한다.

20,000동 이상의 벌금을 적용하는 경우 처벌관할권자는 행정위반처리의정 제47조 규정에 따라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서류 작성일로부터 15일내에 처벌관할권자는 행정위반처리의정 제48조 규정에 따라 처벌결정을 내리고 처벌되는 조직, 개인에게 처벌결정을 송달하여야 한다. 위의 시한은 연장할 수 있으나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처벌결정은 처벌결정을 내린 날로부터 3일내에 처벌받은 조직, 개인 및 벌금징수장소에 송달되어야 한다. 조직, 개인이 처벌결정을 수령한 날로부터 5일내에 처벌받은 조직, 개인이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관할권자는 행정위반처리의정 제55조 규정에 따라 강제결정권을 갖는다.

#### (나) 罰金納付

벌금처벌을 받은 환경보호에 관한 행정위반행위 조직, 개인은 처벌결정에 기재된 기한 및 장소에 벌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규정된 기한에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된다. 처벌한 사람이 벌금을 직접 징수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엄금된다.

#### (다) 許可使用權의 박탈

환경보호에 관한 국가관리기관으로부터 환경보호에 관련내용이 있는 허가서, 증명서(이하 허가서)를 받은 조직, 개인은 모두 만약 그 허가서 사용에 관한 규정에 직접 관련된 행정위반의 경우 사용권을 박탈당할 수 있다.

허가서 사용권박탈 결정시에는 관할권자는 행정위반처리의정 제50조에 따라 서류를 작성하고 허가서 사용권 박탈이유를 명확히 기재하는 동시에 위반행위를 중지시켜야 한다. 허가서사용권 박탈은 본 의정 제21조제2항, 제3항, 제6항에 규정된 관할권자가 서면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결정은 처벌받은 조직, 개인에게 송달해야 하며 동시에 허가서 발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 의정 제21조제4항, 제5항, 제6항에 규정된 관할권자는 환경관련 허가서 발급기관에 허가서환수제안권이 있다. 무기한 허가서 사용권 박탈은 ① 허가서가 관할권에 위반하여 발급된 경우, ②허가서 내용이 환경보호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③계속 활동을 하게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정도의 심각한 위반을 한 경우 허용된다.

### Ⅲ. 北韓과 베트남의 環境保護法制分析

#### (라) 處罰에 관한 不服節次

환경보호에 관해 행정위반 처벌을 받은 조직, 개인 또는 戶의 합법적인 대표는 관할권자의 처벌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다. 이 경우 불복절차는 행정위반처리의정 제87조 내지 제89조의 규정에 의한다.

행정위반처리의정 제87조에서는 처벌받은 조직, 개인 또는 戶의 합법적 대표는 처벌결정권자의 직근상급자에게 항고할 수 있다고 하여 직근상급자에 대한 항고권을 인정하고 있다.

행정위반처벌을 받은 개인, 조직 또는 戶의 합법적인 대표는 결정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내에 처벌결정권자에게 항고할 수 있다. 항고접수일로부터 15일 내에 항고를 접수한 사람은 항고인에게 서면으로 회신할 책임이 있다. 통보된 항고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항고인은 항고에 관한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3일내에 처벌결정권자의 직근상급자에게 재항고 할 수 있다. 재항고 접수일로부터 20일내에 처벌결정을 내린 기관의 직근상급 기관장은 검토후 항고인에게 서면으로 회신할 책임이 있다.<sup>31)</sup>

항고결정권자는 다음의 결정을 할 수 있다.

- a. 원처벌결정의 유지
- b. 처벌형식, 기준, 방법의 변경
- c. 처벌결정을 파기

항고를 통해 처벌형식, 기준의 변경의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 반환 등의 결정을 할 수 있다. 항고인은 배상, 반환에 관하여 불복하는 경우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31) 행정위반처리의정 제89조 참조.

## IV. 베트남의 環境影響評價制度

모든 투자프로젝트가 환경규제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보고 및 환경기준등록은 투자프로젝트의 허가신청단계부터 요구되는 등 외국인투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하에서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 상론하고자 한다.

### 1. 環境影響評價對象 프로젝트

#### (1) 環境影響評價의 定義 및 프로젝트의 範疇化

환경보호법 제2조제11항에서는 환경영향평가를 사회·경제발전프로젝트와 계획, 생산과 경영활동, 경제, 과학·기술, 보건, 문화, 사회, 안전, 국방 또는 기타 시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평가, 예측하고 환경보호를 위한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1994년 10월 18일 환경보호법의 시행을 위한 175-CP 정부의정은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프로젝트를 5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첫 번째 영역은 지역발전 종합전략, 각 성 및 중앙직속 시의 발전전략과 발전계획, 도시 및 인구밀집지역 발전전략이며, 두 번째 영역은 경제, 과학, 보건, 문화, 사회, 안전, 국방프로젝트이고, 세 번째 영역은 외국조직이나 외국인 또는 국제기구가 투자·지원·원조·기부한 자금으로 베트남영토내에서 수행되는 프로젝트이다.

네 번째 영역은 위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영역에 해당되는 프로젝트이나 1994년 1월 10일 이전에 승인되어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프로젝트를 말하며, 다섯 번째 영역은 1994년 1월 10일 이전에 이미 가동에 들어간 경제, 과학, 보건, 문화, 사회, 안전, 국방프로젝트를 말한다.

환경보호법의 시행을 위한 175-CP 정부의정 11조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다섯가지 범주 중 첫 번째 범주에서 네 번째 범주에 속하는 프로젝트는 2단계의 환경영향평가 즉 예비환경영향평가와 정밀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구체화한 것이 1997년 8월 20일의 1100/TT-MTg 투자프로젝트의 환경영향평가보고의 작성과 심사에 관한 통지(이하 1997년 통지)였다.

#### IV. 베트남의 環境影響評價制度

그러나 1998년 4월 29일 투자프로젝트의 환경영향평가보고의 작성과 심사에 관한 490/1998/TT-BKHCMNT 통지(이하 1998년 통지)는 외국인투자법시행의정 제39조에 근거하여 투자프로젝트를 두 가지 범주로 구분하고 있다. 이 통지는 1997년 통지를 대체한 것이다.

1997년 통지는 먼저 환경규제대상을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있다. 제1유형은 환경영향평가보고서를 요하지 않는 투자프로젝트를 말하며 제2유형은 제1유형과 제3유형에 속하지 않는 투자프로젝트를 말한다. 제3유형은 그 프로젝트가 시행되는 곳이나 생산활동의 성질상 두 단계의 환경영향평가를 요하는 투자프로젝트를 말한다. 즉 제3유형에 속하는 투자프로젝트는 제1단계로서 투자허가신청시 예비환경영향평가보고서를 작성·제출하고 제2단계로서 투자허가획득 후 상세한 정밀환경영향평가보고서를 작성·제출하며 투자프로젝트가 가동에 들어가기 전까지 모든 절차가 완료되어야 했다.

그러나 현행 1998년 통지는 투자프로젝트를 두 개의 범주로 구분함으로써 투자프로젝트의 구분을 단순화했다. 즉 제1범주와 제2범주가 그것인데 제1범주를 열거하고, 제1범주에 속하지 아니한 영역을 제2범주로 하고 있으며 투자프로젝트가 어떤 범주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환경규제 방식에 있어서 차이를 두고 있다.

1997년 통지에 따르면 모든 프로젝트를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프로젝트와 환경영향평가가 면제되는 프로젝트를 나누고 다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프로젝트를 일반적인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프로젝트와 2단계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프로젝트로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가 면제되는 프로젝트에 대하여는 프로젝트가동전, 즉 事前的 環境規制가 미비되어 있었다.<sup>32)</sup> 이에 반하여 1998년 통지는 모든 프로젝트를 두 개의 범주 즉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프로젝트와 환경영향평가는 면제되지만 환경기준을 등록하여야 하는 프로젝트로 구분하여 결과적으로 모든 프로젝트가 事前的 環境規制下에 존재한다. 또한 1998년 통지는 1997년 통지상의 2단계 환경영향평가 즉 예비환경영향평가와 정밀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프로젝트를 1회의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여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32) 이 범주에 속하는 프로젝트의 허가신청인은 신청서상에 베트남환경기준에 충족되는 폐기물·폐수처리계획과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요소를 기술하여야 했다. 1997년 8월 20일의 1100/TT-MTg 투자프로젝트의 환경영향평가보고의 작성과 심사에 관한 통지 참조.

(2) 프로젝트의 範疇化의 內容

1) 제1범주

제1범주에 속하는 프로젝트는 환경사고와 대규모 환경오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은 영역의 프로젝트이다. 또한 통제가 어렵고 환경기준의 결정 또한 어렵다. 이에 속하는 투자프로젝트 영역은 1998년 4월 29일 투자프로젝트의 환경영향평가보고서의 작성과 심사에 관한 490/1998/TT-BKHCMNT 통지의 부록I에 열거되어 있다.

제1범주에 속하는 투자프로젝트는 환경영향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공업구나 수출가공구에 투자하는 경우, 그 공업구나 수출가공구의 환경영향평가보고서가 기준에 충족되었다는 승인을 받았다면 그 프로젝트는 환경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등록된다. 공업구와 수출가공구의 투자를 촉진하는 한편 2중으로 심사를 받는 절차상의 중복을 개선한 것이다. 투자 단계별 환경규제내용은 후술한다.

2) 제2범주

제2범주에 속하는 프로젝트는 제1범주에 속하지 아니한 프로젝트를 말한다. 제2범주에 속하는 프로젝트는 투자자 자신이 작성하고 분석한 환경영향평가보고서를 근거로 환경기준충족여부가 결정된다.

(3) 環境影響評價對象프로젝트의 目錄

환경영향평가보고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프로젝트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 ① 환경보호지역, 자연보존지역, 관광지역, 국가·국제적 문화·역사유적 내 또는 인접지에 실시되는 투자프로젝트
- ② 계 획
  - a. 개발지역계획
  - b. 개발부문계획
  - c. 도시계획
  - d. 공업구·수출가공구

#### IV. 베트남의 環境影響評價制度

- ③ 석유·가스
  - a. 탐 사
  - b. 가 공
  - c. 운 송
  - d. 석유저장소(20,000m<sup>3</sup>이상 규모)
- ④ 야금공장(연산 1,000,000톤이상 규모)
- ⑤ 피혁공장(연산 10,000톤이상 규모)
- ⑥ 방직공장(연산 20,000,000m<sup>3</sup>이상 규모)
- ⑦ 페인트공장(연산 1,000톤이상), 고무가공공장(연산 10,000톤이상 규모)
- ⑧ 제당시설(연 사탕수수 100,000톤 처리규모이상 규모)
- ⑨ 식품가공공장(연산 1,000톤이상 규모)
- ⑩ 냉동시설(연산 1,000톤이상 규모)
- ⑪ 화력발전소(200MW이상 규모)
- ⑫ 펄프·제지공장(연산 펄프 40,000톤이상 규모)
- ⑬ 시멘트공장 (연산 시멘트 1,000,000톤이상 규모)
- ⑭ 관광·위락시설 (100ha이상 규모)
- ⑮ 공 항
- ⑯ 항만시설(10,000DWT이상 선박 접안 가능)
- ⑰ 철도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TCVN 4054-85의 I급 내지 III급으로 50KM이상 규모)
- ⑱ 수력발전소(저수호가 1억m<sup>3</sup>이상 규모)
- ⑲ 관개시설(급·배수, 염전. 10,000ha이상 규모)
- ⑳ 폐기물·폐수 처리시설(폐수 1일 100,000m<sup>3</sup>이상 규모의 처리규모, 폐기물소각장)
- ㉑ 광산 및 건축자재 개발(광물 및 골재 연산 100,000m<sup>3</sup>이상 규모)
- ㉒ 목재벌채장(모든 사업장)
- ㉓ 수산양식지역(면적 200ha이상 규모)
- ㉔ 독극물 생산·저장·사용시설(모든 시설)
- ㉕ 원자로(모든 시설)



## 2. 투자프로젝트의 段階別 環境規制

투자프로젝트가 제1범주에 속하는지 제2범주에 속하는지에 따라 절차와 내용에 차이가 있다. 이 하에서는 투자프로젝트를 단계별로, 즉 투자프로젝트허가서 신청단계, 계획 및 건설단계, 건설완료단계로 나누어 각 단계별 환경규제를 투자프로젝트가 속하는 범주에 따라 설명한다.

### (1) 投資프로젝트 許可書 申請段階

#### 1) 제1범주

제1범주에 속하는 투자프로젝트의 신청인은 그 투자허가신청서상 독립된 장이나 절에서 그 프로젝트가 환경에 미칠 잠재적인 영향을 기술하여야 하며 관할국가기관은 이를 근거로 신청서를 심사한다.

1998년 통지가 제시하고 있는 환경영향요소설명서는 투자허가신청서 경제-기술설명보고서나 타당성조사서에 포함되어야 하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33)</sup>

#### ① 환경에 대한 주요영향요소에 관한 간략한 설명

- a. 투자예정지환경의 현황<sup>34)</sup> 및 투자예정지 오염정도에 관한 언급
- b. 도표설명, 생산기술설명, 원료, 사용연료, 화학물질목록(경제기술설명서에서 명확히 밝히지 않은 경우)
- c. 투자프로젝트 시행시 그 가동에 따른 환경에 대한 주요영향요소(예상 배기가스, 폐수, 폐기물의 양 및 예상되는 잠재적 환경영향 정도)

#### ② 투자프로젝트의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 극복 및 해결 방안

#### 2) 제2범주

##### (가) 環境基準登錄時 提出書類

환경기준등록시 ①1998년 통지 부록 IV.2에 규정된 양식에 따른 환경기준 등록신청서 1부, ②환경기준등록서 3부(외국인직접투자이거나 외국당사자를

33) 1998년 4월 29일 투자프로젝트의 환경영향평가보고의 작성과 심사에 관한 490/1998/TT-BKHCMNT 통지 부록II 참조.

34) 지표수 및 지하수의 수질, 대기오염상황(공기의 질), 생태계 등을 포함한다.

#### IV. 베트남의 環境影響評價制度

포함하는 합작기업의 경우 영문 환경기준등록서 1부 포함), ③투자프로젝트의 타당성조사서나 경제-기술설명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 (나) 환경기준등록서의 내용

제2범주에 속하는 프로젝트의 신청인은 환경기준등록서를 작성하여 환경보호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998년 통지가 제시하고 있는 환경기준등록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35)</sup>

◎ 프로젝트명:

◎ 주소:

◎ 전화번호:

◎ FAX:

##### ① 투자예정지현황

- 위치
- 평면적
- 거주지 및 기타 공업기반시설까지의 거리
- 토지사용현황
- 용수공급원, 취수원 및 일일용수수요량
- 원료공급 및 생산물운송 교통체계
- 프로젝트시행에 따른 폐수저수지
- 폐기물 저장·처리지

##### ② 생산기술에 관한 설명<sup>36)</sup>

- 총투자자본
- 천연원료, 연료, 보조원료(각각의 특성과 연간 필요량 및 공급지)
- 천연원료, 연료, 보조원료의 운송, 공급과 보존방식
- 생산능력
- 생산공정에 관한 도면<sup>37)</sup>

35) 1998년 4월 29일 투자프로젝트의 환경영향평가보고의 작성과 심사에 관한 490/1998/TT-BKHCMNT 통지의 부록 III 참조.

36) 당해 프로젝트가 천연자원의 개발과 공급구역을 포함하는 경우, 관련 문제를 명확히 설명하여야 한다.

37) 이때 용수공급처리, 발전기, 보일러, 난방체계 및 냉방체계 등을 포함하는 경우 상세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 설비의 특성
- 생산품의 양과 질
- 생산품의 보관과 운송방식

③ 각 오염발생원

- 배기가스
  - 발생원
  - 배출량
  - 오염물질의 농도
- 폐수(생산공정상의 냉각수와 순환수 관련 자료를 포함할 것)
  - 발생원
  - 배출량
  - 오염물질의 농도
- 폐기물
  - 발생원
  - 배출량
  - 오염물질의 농도
- 투자활동에 따른 사고(화재, 폭발, 기름유출)
  - 발생원인
  - 영향규모

④ 오염감축방안

- 배기가스 수집 및 처리체계
  - 배출구(굴뚝)의 높이
  - 처리설비의 특성
  - 사용기술과 처리의 효율성
  - 사용화학물질(양, 성분)
  - 처리공정 후 발생하는 폐기물
  - 예상되는 건설, 설치 및 운전비용
- 폐수 수집과 처리체계
  - 폐수 수집로 및 하수도
  - 처리탱크의 구조
  - 사용기술과 처리의 효율성

#### IV. 베트남의 環境影響評價制度

- 사용화학물질(양, 성분)
  - 처리공정 후 발생하는 폐기물
  - 예상되는 건설, 설치 및 운전비용
  - 폐기물 수집과 처리체계
    - 폐기물 탱크 및 저장소의 구조
    - 운송과정
    - 처리기술
    - 예상되는 건설, 설치 및 운전비용
  - 공장부지에 식수되는 나무의 범위
  - 사고방지, 처리 및 구조계획
    - 장비
    - 이용화학물질
    - 효율성
    - 예상되는 장비구입비용 및 정기적인 훈련비용
- ⑤ 환경감시계획
- 감시위치
  - 감시기준
  - 감시횟수
  - 예상되는 시행비용
- ⑥ 환경기준준수에 관한 보증
- 적용되는 베트남기준
  - 베트남기준이 없는 경우 적용되는 외국기준 즉, 국가명, 공포년도, 공포기관, 적용효과(적용기준 전체의 1부를 첨부할 것)
  - 처리공정의 완성시기
  - 베트남 국내·외기준을 위반하여 환경오염을 야기한 경우 베트남법에 따른 책임을 부담할 것을 보증함

#### (2) 計劃 및 建設段階

##### 1) 환경영향평가보고서 심사청구시 제출서류

심사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① 부록 IV.1에 따른 환경

영향평가보고서의 심사신청서 1부, ② 환경영향평가보고서 7부 (외국인직접투자이거나 외국당사자를 포함하는 합작기업의 경우 영문 환경기준등록서 1부 포함), ③ 투자프로젝트의 타당성조사서나 경제-기술설명서 1부.

2) 제1범주프로젝트의 환경영향평가보고서의 내용

투자허가서를 발급받고 투자건설 부지를 결정한 후, 제1범주에 속하는 투자 프로젝트의 투자자는 심사를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환경보호를 담당하는 관할 국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보고서의 내용<sup>38)</sup>은 다음과 같다.

(가) 보고서 서론

- 보고목적
- 보고서의 근거가 되는 자료
- 평가방법의 선택
- 조직, 구성원, 방법과 과정

(나) 보고서 본문

① 프로젝트개관

- 프로젝트명
- 주관기관명, 건설기관명
- 경제사회적 목표와 프로젝트의 정치적 의의
- 프로젝트의 기본내용, 기대되는 경제사회적 이익
- 프로젝트의 전개와 예상
- 프로젝트의 지출, 지출과정

② 프로젝트시행예정지 환경개황

- 프로젝트예정지에 관련된 자연조건 및 경제사회적 조건 개관
- 프로젝트시행으로 발생하는 조건들의 예견변화

③ 자연과 환경요소에 미치는 프로젝트시행의 영향

A. 프로젝트시행지 환경요소에 미치는 프로젝트시행의 영향

영향의 시간에 따른 변화정도와 범위 및 성질에 관한 설명, 프로젝트가 시행되지 않은 경우와의 비교

38) 1994년 10월 18일 환경보호법 시행을 위한 175-cp 정부의정 부록 1.2에 규정 참조.

#### IV. 베트남의 環境影響評價制度

가. 물적 환경에 미치는 영향

나. 생물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a. 수상생물자원

b. 육지생물자원

다. 인간이 사용하는 자원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

a. 용수공급

b. 교통운송

c. 농업

d. 수산

f. 에너지

e. 광산

g. 공업

h. 수공업

j. 기타 다른 목적으로의 토지사용

k. 휴양과 건강보호

라. 인간의 삶의 질에 직접영향을 미치는 조건들에 관한 영향

a. 경제사회적 조건

b. 문화적 조건

c. 미술적 조건

B. 프로젝트가 시행되는 경우 환경에 미치는 종합적 변화

- 프로젝트시행방안에 따른 종합적인 변화분석
- 방안에 따른 자원과 환경에 대한 손실
- 경제·사회와 환경 및 자원에 미치는 득실의 비교
- 생산에서의 부산물과 폐기물. 각 생산의 생산물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C. 프로젝트의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의 극복방안

D. 평 가

④ 프로젝트시행방안선택에 관한 건의

- 환경보호관점에서의 프로젝트시행방안선택에 관한 건의
- 기승인된 방안에 부속되는 환경보호방법에 관한 건의

### (3) 建設完了段階

프로젝트가 가동에 들어가기 전에 환경보호를 담당하는 관할 국가기관은 건축허가기관과 협조하여 환경보호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과 기타 안전조건을 검사하여야 한다. 프로젝트가 기승인된 환경보호계획을 따르지 않은 경우 투자프로젝트의 투자자에게 환경영향평가보고서나 환경기준등록서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투자프로젝트가 환경보호에 관한 요건을 완전히 충족하는 경우 환경보호를 담당하는 관할 국가기관은 확인서를 발급한다.

## 3. 環境影響評價報告書 審査 및 承認

### (1) 審査 및 承認 機關

환경영향평가보고서의 심사 및 승인은 중앙차원의 프로젝트와 지방차원의 프로젝트, 두 가지로 구분된다. 중앙차원의 프로젝트는 과학-기술-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전문기관에 승인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지방차원의 프로젝트는 지방 과학-기술-환경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과학-기술-환경부는 국회의 심의를 위하여 프로젝트의 환경영향평가보고서의 목록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보호에 관한 국가관리기관이 환경영향평가보고서 심사 및 승인권을 갖는다. 그러나 필요한 경우 審査委員會를 설립할 수 있다. 과학-기술-환경부는 중앙차원의 심사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다. 심사위원회는 과학자, 관리공무원, 사회단체의 대표, 일반공민을 포함하며 심사위원회 위원의 수는 9명을 초과할 수 없다.<sup>39)</sup>

각급 심사기관은 관할내에서 제1범주에 속하는 투자프로젝트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보고서의 승인과 제2범주에 속하는 투자프로젝트에 대한 환경기준등록서의 확인 여부를 결정한다. 또한 그 프로젝트의 환경보호활동을 감독한다. 환경영향평가보고서 심사 및 승인가관을 프로젝트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40)</sup>

39) 1994년 10월 18일 환경보호법의 시행을 위한 175-CP 정부의정 제15조 참조.

40) 1994년 10월 18일 환경보호법의 시행을 위한 175-CP 정부의정 부록II 참조.

#### IV. 베트남의 環境影響評價制度

- ① 광산개발프로젝트는 대규모·중간규모 프로젝트는 과학-기술-환경부가, 소규모 프로젝트는 과학-기술-환경소가 담당한다.
- ② 석유탐사·개발 및 정유, 석유화학, 가스, 송유관 등의 프로젝트는 모두 과학-기술-환경부가 담당한다.
- ③ 화학공장프로젝트는 모두 과학-기술-환경부가 담당한다.
- ④ 제강·제련제철공장프로젝트는 모두 과학-기술-환경부가 담당한다.
- ⑤ 야금공장프로젝트는 모두 과학-기술-환경부가 담당한다.
- ⑥ 피혁공장프로젝트는 연산 1000t이상 규모인 경우 과학-기술-환경부가 담당하고 그보다 소규모인 경우 과학-기술-환경소가 담당한다.
- ⑦ 방직공장프로젝트는 연산 3천만m이상 규모인 경우 과학-기술-환경부가 담당하고 그보다 소규모인 경우 과학-기술-환경소가 담당한다.
- ⑧ 식물보호제공장프로젝트는 모두 규모인 경우 과학-기술-환경부가 담당한다.
- ⑨ 페인트공장 고무공장프로젝트는 모두 과학-기술-환경부가 담당한다.
- ⑩ 플라스틱공장프로젝트는 연산 1000t이상 규모인 경우 과학-기술-환경부가 담당하고 그보다 소규모인 경우 과학-기술-환경소가 담당한다.
- ⑪ 방사능사용시설프로젝트는 모두 과학-기술-환경부가 담당한다.
- ⑫ 공항프로젝트는 모두 과학-기술-환경부가 담당한다.
- ⑬ 공업구프로젝트는 모두 과학-기술-환경부가 담당한다.
- ⑭ 수력발전소 저수지프로젝트는 1억m<sup>3</sup>이상 규모인 경우 과학-기술-환경부가 담당하고 그보다 소규모인 경우 과학-기술-환경소가 담당한다.
- ⑮ 수리시설프로젝트는 일정규모이상인 경우 과학-기술-환경부가 담당하고 그보다 소규모인 경우 과학-기술-환경소가 담당한다.
- ⑯ 화력발전소프로젝트는 30MW이상 규모 또는 연 500,000t이상 규모인 경우 과학-기술-환경부가 담당하고 그보다 소규모인 경우 과학-기술-환경소가 담당한다.
- ⑰ 시멘트공장프로젝트는 연산 40,000t이상 규모인 경우 과학-기술-환경부가 담당하고 그보다 소규모인 경우 과학-기술-환경소가 담당한다.
- ⑱ 펄프 및 제지공장프로젝트는 과학-기술-환경부가 담당한다.
- ⑲ 비료공장프로젝트는 연산 100,000t이상 규모인 경우 과학-기술-환경부가 담당하고 그보다 소규모인 경우 과학-기술-환경소가 담당한다.



- ⑳ 식품가공공장프로젝트는 연산 1000t이상 규모인 경우 과학-기술-환경부가 담당하고 그보다 소규모인 경우 과학-기술-환경소가 담당한다.
- ㉑ 製糖시설프로젝트는 연 사탕수수 100,000t 처리규모이상인 경우 과학-기술-환경부가 담당하고 그보다 소규모인 경우 과학-기술-환경소가 담당한다.
- ㉒ 병원프로젝트는 500병상 이상 규모인 경우 과학-기술-환경부가 담당하고 그보다 소규모인 경우 과학-기술-환경소가 담당한다.
- ㉓ 철도프로젝트(I, II, III급)는 50km이상 규모인 경우 과학-기술-환경부가 담당하고 그보다 소규모인 경우 과학-기술-환경소가 담당한다.
- ㉔ 송전소 프로젝트는 110kV이상 규모인 경우 과학-기술-환경부가 담당하고 그보다 소규모인 경우 과학-기술-환경소가 담당한다.
- ㉕ 관광구 휴양지프로젝트는 100ha이상 규모인 경우 과학-기술-환경부가 담당하고 그보다 소규모인 경우 과학-기술-환경소가 담당한다.
- ㉖ 석유비축시설프로젝트는 3000m<sup>3</sup>이상 규모인 경우 과학-기술-환경부가 담당하고 그보다 소규모인 경우 과학-기술-환경소가 담당한다.
- ㉗ 독극물저장시설프로젝트는 모두 과학-기술-환경부가 담당한다.
- ㉘ 농장프로젝트는 2000ha이상 규모인 경우 과학-기술-환경부가 담당하고 그보다 소규모인 경우 과학-기술-환경소가 담당한다.
- ㉙ 목재벌채프로젝트는 3000ha이상 규모인 경우 과학-기술-환경부가 담당하고 그보다 소규모인 경우 과학-기술-환경소가 담당한다.
- ㉚ 공업림조림 프로젝트는 200ha이상 규모인 경우 과학-기술-환경부가 담당하고 그보다 소규모인 경우 과학-기술-환경소가 담당한다.
- ㉛ 수산양식프로젝트는 200ha이상 규모인 경우 과학-기술-환경부가 담당하고 그보다 소규모인 경우 과학-기술-환경소가 담당한다.
- ㉜ 항구접안시설(부두)프로젝트는 100,000t급이상 규모인 경우 과학-기술-환경부가 담당하고 그보다 소규모인 경우 과학-기술-환경소가 담당한다.
- ㉝ 압축합판 인조합판공장프로젝트는 연산 500,000Tm<sup>3</sup>이상 규모인 경우 과학-기술-환경부가 담당하고 그보다 소규모인 경우 과학-기술-환경소가 담당한다.
- ㉞ 이주지역프로젝트는 500호이상 규모인 경우 과학-기술-환경부가 담당하고 그보다 소규모인 경우 과학-기술-환경소가 담당한다.

#### IV. 베트남의 環境影響評價制度

- ㉟ 하구언사용프로젝트는 500ha이상 규모인 경우 과학-기술-환경부가 담당하고 그보다 소규모인 경우 과학-기술-환경소가 담당한다.
- ㊱ 기계공업프로젝트는 50,000t이상 규모인 경우 과학-기술-환경부가 담당하고 그보다 소규모인 경우 과학-기술-환경소가 담당한다.
- ㊲ 기본통신시설프로젝트는 라디오·텔레비전방송국의 경우 과학-기술-환경부가 담당한다.
- ㊳ 냉동시설프로젝트는 대규모·중간규모 프로젝트는 과학-기술-환경부가, 소규모 프로젝트는 과학-기술-환경소가 담당한다.
- ㊴ 호텔과 상가프로젝트는 대규모·중간규모 프로젝트는 과학-기술-환경부가, 소규모 프로젝트는 과학-기술-환경소가 담당한다.

#### (2) 審査 및 承認 節次

환경보호법의 시행을 위한 175-CP 정부의정 제16조는 환경영향평가보고서의 심사 및 승인기간은 관련서류가 접수된 지 3월을 넘지 못한다고 규정<sup>41)</sup>하고 있으나 1998년 통지는 환경보호를 담당하는 관할 국가기관이 유효한 신청서를 접수한 수 6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신청이 필요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심사기관은 5일 이내에 그 신청의 보완을 통지하여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보고서의 승인 후 10일 이내에 심사기관은 10일 이내에 환경영향평가보고서의 승인결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sup>42)</sup>

환경기준등록서의 확인과 확인증의 발급은 환경보호를 담당하는 관할 국가기관이 유효한 신청서를 접수한 후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신청이 필요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심사기관은 5일 이내에 그 신청의 보완을 통지하여야 함은 환경영향평가보고서의 승인절차와 같다.

외국조직이나 외국인 또는 국제기구가 투자·지원·원조·기부한 자금으로 베트남영토내에서 수행되는 프로젝트의 경우, 그 승인기간은 투자허가발급기간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sup>43)</sup>

환경영향평가보고서의 승인과 환경기준등록확인증의 양식은 1998년 통지부록 5와 6에 따른다.

41) 1994년 10월 18일 환경보호법의 시행을 위한 175-CP 정부의정 제16조 참조.

42) 1998년 4월 29일 투자프로젝트의 환경영향평가보고의 작성과 심사에 관한 490/1998/TT-BKHCMNT 통지 참조.

43) 1994년 10월 18일 환경보호법의 시행을 위한 175-CP 정부의정 제16조 참조.

### (3) 環境影響評價方法 및 그 基準

환경영향평가방법은 현재의 국제표준에 따른 객관적이고 과학적이고 실질적이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보고서는 전문가와 전문시설을 보유한 기관이나 단체에 의해 작성되어야 한다.<sup>44)</sup> 모든 기관과 단체는 환경영향평가지 베트남기준을 사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베트남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외국의 기준을 적용한다. 1998년 통지는 베트남환경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경우, 투자자는 과학-기술-환경부의 서면허가를 얻어 선진제국의 환경보호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베트남영토내에 투자되는 모든 프로젝트는 과학-기술-환경부 장관이 공포한 베트남환경기준에 따라야 함은 물론이다. 또한 각 지역은 자신의 기준이 과학-기술-환경부 장관이 공포한 기준보다 더 높은 경우에만 자신의 환경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sup>45)</sup>

내무부와 국방부의 통제를 받는 프로젝트의 경우에도 과학-기술-환경부의 지침과 조화되게 환경영향평가보고가 승인되어야 한다.<sup>46)</sup>

1994년 1월 10일 이전에 이미 가동에 들어간 경제, 과학, 보건, 문화, 사회, 안전, 국방프로젝트는 일정기간내에 단계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도 과학-기술-환경부의 지침과 조화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현재 가동중인 프로젝트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보고서의 승인결과는 ①계속 가동허가, ②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투자 및 건설명령, ③적용기술변경 및 부지이전명령, ④가동중지명령 등이다.<sup>47)</sup>

## 4. 審査에 대한 不服節次

프로젝트관리자나 대표자, 투자자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그 심사위원회의 구성을 결정한 기관이나 환경보호국가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상급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제기는 서류접수 후 최장 3개월 내에 심사되어야 한다.<sup>48)</sup>

44) 1994년 10월 18일 환경보호법의 시행을 위한 175-CP 정부의정 제12조 참조.

45) 1998년 4월 29일 투자프로젝트의 환경영향평가보고의 작성과 심사에 관한 490/1998/TT-BKHCNMT 통지 참조.

46) 1994년 10월 18일 환경보호법의 시행을 위한 175-CP 정부의정 제19조 참조.

47) 1994년 10월 18일 환경보호법의 시행을 위한 175-CP 정부의정 제20조 참조.

48) 1994년 10월 18일 환경보호법의 시행을 위한 175-CP 정부의정 제18조 참조.



## V. 北韓과 베트남의 外國人投資法과 環境保護

### 1. 北韓의 外國人投資관련法에 있어 環境保護規定

북한에 있어 외국투자기업의 설립, 운영, 해산의 과정에 이르는 모든 경영 활동은 외국인투자법제의 적용을 받는 외에도 민법, 상사법, 행정법 등의 일반법규와 수출입, 출입국, 외환관리, 산업재산권, 노동, 환경, 토지, 자원관리 등에 관한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된다.<sup>49)</sup>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북한은 외국인의 투자유치와 기업활동을 위한 대외 개방정책의 일환으로 외국인투자관계법제들을 대대적으로 제정 내지 개정하였는데, 향후 예측되는 외국기업의 투자와 기업활동에 의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들을 두고 있다.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外國人投資法

북한의 외국인 투자법 제1조는 “세계 여러나라들과의 경제협조를 확대 발전 시키는 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일관한 정책”이라고 규정하고 “국가는 완전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외국투자자들이 공화국 영역 안에 투자하는 것을 장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1조에서는 “민족경제 발전과 나라의 안전에 지장을 주거나 경제기술적으로 뒤떨어지고 환경보호의 요구에 저촉되는 대상의 투자는 금지하거나 제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투자법은 민족경제발전과 국가안전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보호에 저촉되는 부문의 외국인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 (2) 合營法施行細則

북한의 합영법이 환경보호기준 저해부문에 대한 제한을 규정함에<sup>50)</sup> 따라 합영법시행세칙 제1조는 이 세칙이 김일성주석과 김정일서기가 다른 나라들과의 합영을 잘할 데 대하여 주신 방침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합영법을 철

49) 문준조 외, 남북한법제정비방안연구, 통일부, 1999, 100면.

50) 통일부, 남북경제협력사업실무안내, 1998, 188면.

## V. 北韓과 베트남의 外國人投資法과 環境保護

저히 管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밝히고 제5조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역 안에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사람과 동식물, 자연자원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합영기업은 창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합영기업 및 합작기업의 설립신청절차에서 심사승인기관은 설립신청시 제출된 환경보호관련 자료를 환경보호기관과 합의한 후 설립신청의 승인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sup>51)</sup>

### (3) 外國人企業法施行規程

북한의 외국인기업법시행규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인기업법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동 규정의 제9조는 첫째, 공화국의 안전에 위협을 주거나 지장을 줄 수 있는 경우, 둘째, 국민들의 건강보호와 국토 및 자원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 셋째, 업종과 경영방법이 인민들의 건전한 사상감정과 생활기풍에 맞지 않거나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에 외국인기업의 창설을 승인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sup>52)</sup>

### (4) 自由經濟貿易地帶法

자유경제무역지대법은 북한내에 자유경제무역지대를 창설하고 효과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대외경제협력과 교류를 확대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입법되었으며 동 법의 제17조는 “모든 상품은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 자유롭게 들어오며, 그것을 저장, 보관, 가공, 조립, 분해, 선별, 포장, 수리하거나 지대 안에서 국외로 내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나라의 안전과 사회도덕생활, 주민들의 건강과 동식물의 생장에 해로운 상품은 들어올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 (5) 自由貿易港規程

자유무역항규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자유경제무역지대법을 철저히 관철하여 중계무역점의 수송 및 보관과 같은 경제무역활동을 원만히 보장하며 자유무역항의 출입질서와 이용질서를 세우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동 규

51) 위의 책, 191면.

52) 그외에도 설비와 생산공정이 경제기술적으로 뒤떨어진 경우, 생산제품이 국내외에서 수요가 없거나 적을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정의 제25조는 항사업감독기관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했을 경우 제재를 적용한다.

- ① 항의 구조물, 시설물, 설비를 못쓰게 만들었을 경우에는 입은 손해를 보상시키고 정도에 따라 5천원까지의 벌금을 물린다.
- ② 배와 짐을 취급하는데 지장을 주었을 경우에는 2천원까지의 벌금을 물린다.
- ③ 기름을 항수역에 흘렸을 경우에는 오염된 수역의 평방미터당 1천원까지의 벌금을 물린다.
- ④ 독이 있는 물질, 오수와 오물을 항수역에 버리거나 항지역의 정한 장소 밖에 버렸을 경우에는 건당 2만원까지의 벌금을 물린다.
- ⑤ 피치, 송진과 같은 가연성 물질을 태워 환경오염을 시켜...(미입수부분).
- ⑥ 배가 수속없이 출항하는 경우에는 배를 억류하고 2만원까지의 벌금을 물린다.
- ⑦료를 정한기간안에 물지 않을 경우에는 수송수단과 짐을 류치할 수 있다.
- ⑧ 해당기관의 승인없이 측심, 전파탐지, 무선기기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해당지재 또는 배를 몰수한다.

#### (6) 土地賃貸法

북한의 토지임대법은 외국투자가와 외국투자기업에 필요한 토지를 임대하고 임차한 토지를 이용하는 질서를 정립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동법의 제3조는 임대한 토지에 있는 천연자원과 매장물은 토지이용권의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 2. 베트남의 外國人投資關聯 環境規制

베트남환경보호법 제6조에서 이미 내·외국인과 조직의 환경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외국인투자법에도 환경관련 조항들이 존재한다. 이하에서는 베트남외국인투자법과 그 시행에 관한 정부의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투자자의 환경관련규제내용을 살펴본다.

### (1) 베트남의 外國人投資法導入背景

인도차이나반도의 중심국가인 베트남은 1979년 말부터 계획경제하의 부분적 자유화조치를 단행하는 신경제정책을 시행하여 경제회복의 발판을 마련하고 1986년 말 제6차 공산당 전당대회에서 시장경제원리의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대외개방·개혁정책인 '도이머이'정책을 채택한 이후 1987년 외국인투자법을 제정·공포한 이래 1990년, 1992년 그리고 1996년 11월에 이르기까지 3차에 걸쳐 외국인투자법 개정하고 재정금융개혁 등의 개혁정책을 추진한 결과 물가안정, 재정적자축소, 외국인투자증대 등 비교적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베트남의 외국인투자법에 의하면 각부, 부급기관, 성·중앙직속시 인민위원회는 환경을 포함하는 외국인의 국내투자전개에 관련된 투자를 해결해야할 책임을 지고 있다.<sup>53)</sup> 또한 베트남에 진출한 외국인이 기업이 환경에 관하여 정부가 정한 법규에 위반된 행위를 하게되면 최고 1억 동까지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sup>54)</sup>

### (2) 環境規制遵守義務

베트남외국인투자법은 제4장에서 외국인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 장 제51조는 외국인투자기업과 경영협력계약에 참가한 외국측 파트너는 환경보호에 대한 법률을 준수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여 환경보호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이 법에 근거하여 베트남외국인투자법시행의정은 제3장 기술이전, 환경보호 및 기계·설비의 구입에 관한 장에서 투자관련 환경규제를 규정하고 있다.

### (3) 環境規制方式

베트남외국인투자법 시행의정 제39조 환경보호에 관한 조항은 먼저 투자프로젝트를 두 가지 범주로 구분한다. 환경영향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프로젝트의 리스트를 과학-기술-환경부가 공포하면 그 리스트에 속하는 투자 프로젝트는 환경영향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함은 물론 그 리스트에 속하지

53) 베트남 외국인투자법 제62조.

54) 행정위반 처리법령(1995년 7월 19일 주석령 제4-L/CTN호) 13조.



않은 투자프로젝트에 비하여 보다 엄격하고 복잡한 환경규제를 받는다.

이에 반하여 그 리스트에 속하지 않은 투자프로젝트는 환경영향을 투자허가 신청서상 기술하여야 한다. 즉 제39조제1항에서 과학-기술-환경부는 활동의 성질, 기술수준 및 환경영향 정도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프로젝트의 리스트를 공포하여야 하며 그 적성 및 심사는 환경보호에 관한 법규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프로젝트의 경우, 투자자는 환경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 각 요소를 설명하고, 건설 및 경영활동의 과정에 있어서의 각 처리조치 및 환경보호의 보장을 투자허가신청서에 기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sup>55)</sup>

1998년 4월 29일 투자프로젝트의 환경영향평가보고의 작성과 심사에 관한 490/1998/TT-BKHCMNT 통지는 이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투자법 시행의정 제39조에 규정된 사항은 외국인투자법이 인정하고 있는 투자형태, 즉 事業協力契約, 合作企業, 100%外國人投資企業의 투자프로젝트허가신청서류에 포함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즉 동 의정 제10조는 사업협력계약형태에 따른 투자프로젝트에 관한 투자인가 신청서류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 의정 제13조는 합작기업형태의 투자프로젝트의 투자인가신청서류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 의정 제27조는 100%외국인투자기업 형태의 투자허가신청서류를 규정하고 있는 바, 모두 동 의정 제39조상의 서류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 3. 對 北韓 및 베트남 投資時 考慮事項

북한과 베트남의 법령은 법체계의 불확실성 이외에도 내용면에서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고 운용경험이 축적되어 있지 않아 예측가능성도 그다지 크지 않다. 특히 이와 같이 투자활동에 대단히 중요하고 직접·간접으로 관련되어 있는 법령들이 정비되어 있지 않으며 현행 법규정의 실효성이 불확실하다는 점은 대북투자의 장애요인이다. 그러나 북한이나 베트남의 관련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무조건 금지되는 것이거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

55) 베트남계획투자부, Huong Dan Dau Tu Nouc Ngoai tai Viet Nam, 통계출판사, p.188 이하 참조.

다. 즉 외국인투자가의 입장에서는 이들 국가의 법규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안정성이 절실히 요망되지만, 자본도입국인 사회주의체제의 북한과 베트남으로서는 보다 탄력적으로 법규정을 운용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개혁초기의 중국이나, 체제개혁전의 유고, 폴란드, 헝가리의 외자도입법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다만, 그러한 입법상의 흠결이 베트남과 달리 북한의 독특한 정치적·경제적 상황으로 인하여 불리한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는 점은 대북투자에 있어 특히 우려되는 요소이다. 요컨대, 중국보다는 대외개방에 있어 한 단계 늦어 있지만 그나마 외국인투자법령이 체계화되어 있는 베트남에 비하여 훨씬 뒤쳐져 있는 북한의 외국인투자법제의 불완전성은 의도적인 것으로 보여지며 그 개선과 치유는 북한 당국의 개방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의지에 전적으로 좌우될 문제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외국인투자기업이 북한에서 경영활동을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법의 유권해석·집행기관도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할 것이다. 법의 변화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를 지도·감독하고 외국인투자법제의 집행을 관장하는 기관을 투자법제에 명기함으로써 문제의 발생시 유권해석과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베트남은 거의 모든 외국인투자관련법에서 이러한 기관을 명시하였으며 1992년 12월 외국인투자법의 개정 당시 제21조에 “법의 변화로 인해 외국인투자자에게 손해가 주게 될 경우 정부는 적절한 방법으로 투자자의 이익을 보장한다”라는 규정을 도입하였다. 중국의 경우에는 베트남과 같이 법의 변화에 따른 손실보장을 두지는 않고 있지만 법의 실시에 관한 유권해석을 대외경제무역부가 주관한다는 것을 거의 모든 투자법의 부칙에 명기하고 있다.<sup>56)</sup>

이에 비해 북한은 법의 유권해석과 집행을 관장하는 기관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이러한 집행기관을 외국인투자법에의 본문에서 유추해볼 수밖에 없다. 합작법과 외국인기업법에서는 투자신청과 승인, 허가, 해산 등의 과정을 집행하는 기관을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으로 하고 있으며 자유경제무역지대법에서는 ‘대외경제위원회’와 ‘자유무역지대 당국’으로, 94년 1월 개정된 합영법에서는 ‘정무원 대외경제기관 또는 자유경제무역지대 당국’으로 또한 1992년 10월 개정된 합영법 시행세칙에서는 ‘국가계획위

56) 문준조 외, 남북한법제정비방안연구, 통일부, 1999, 106면.

원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국가건설위원회', '합영공업총국', '재정부' 등의 다양한 기관으로부터 투자의 사전승인을 얻은 후 소위 '합영주관기관'이라는 불특정기관이 합영사업의 승인과 등록, 경영활동과 해산에 관한 사항을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법제마다 법의 집행기구가 달리 규정되어 있고, '합영주관기관', '정무원 대외경제기관' 등의 불특정기관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은 법의 절차적 규범력을 저하시키고 있다.



## 附 錄



1998년 4월 29일 투자프로젝트의 환경영향평가보고의 작성과 심사에 관한  
490/1998/TT-BKHCNMT 통지 부록 IV.1

환경영향평가보고서의 심사청구서 양식

Cộng Hoà Xã Hội Chủ Nghĩa Việt Nam

Độc lập - Tự do - Hạnh phúc

-----  
(Địa điểm), ngày tháng năm 199 .

đơn xin thẩm định

báo cáo đánh giá tác động môi trường

Kính gửi: Bộ Khoa học, Công nghệ và Môi trường.

(UBND Tỉnh/Tp trực thuộc Trung ương)

Chúng tôi là.....

Chủ Dự án.....

.....

Địa chỉ liên hệ

.....

Địa điểm thực hiện dự án:

.....

Số điện thoại:.....

Số Fax.....

附 錄

Chúng tôi xin chuyển đến Quý Bộ (UBND Tỉnh/Tp) những hồ sơ sau:

- Luận chứng kinh tế kỹ thuật (01 bản tiếng Việt ),
- Báo cáo đánh giá tác động môi trường (07 bản tiếng Việt và 01 bản tiếng Anh ).

Chúng tôi xin bảo đảm độ chính xác của các số liệu trong các văn bản đưa trình và cam kết rằng Dự án của chúng tôi không sử dụng các loại hoá chất, chủng vi sinh trong danh mục cấm của Việt Nam và trong các công ước quốc tế mà Việt Nam tham gia. Chúng tôi cũng xin bảo đảm rằng các tiêu chuẩn, định mức của các nước và các tổ chức quốc tế được trích lục và sử dụng trong Báo cáo của chúng tôi đều chính xác và đang có hiệu lực.

Nếu có gì sai phạm chúng tôi xin hoàn toàn chịu trách nhiệm trước Pháp luật nước Cộng hoà xã hội chủ nghĩa Việt Nam.

Chúng tôi làm đơn này đề nghị Bộ Khoa học, Công nghệ và Môi trường (UBND Tỉnh, Tp. trực thuộc Trung ương, Bộ được uỷ quyền) thẩm định.

Giám đốc Dự án  
(Ký tên và đóng dấu)



1998년 4월 29일 투자프로젝트의 환경영향평가보고의 작성과 심사에 관한  
490/1998/TT-BKHCNMT 통지 부록 IV.2

환경기준등록신청서 양식

Cộng Hoà Xã Hội Chủ Nghĩa Việt Nam  
Độc lập - Tự do - Hạnh phúc

-----

(Địa điểm), ngày tháng năm 199 .

đơn xin đăng ký đạt tiêu chuẩn môi trường

Kính gửi: Bộ Khoa học, Công nghệ và Môi trường.

(UBND Tỉnh/Tp trực thuộc Trung ương)

Chúng tôi là.....

Chủ Dự án.....

-----

Địa chỉ liên hệ:

-----

Địa điểm thực hiện dự án:

-----

Số điện thoại:.....

Số Fax.....

附 錄

Chúng tôi xin chuyển đến Quý Bộ (UBND Tỉnh/Tp)những hồ sơ sau:

- Luận chứng kinh tế kỹ thuật (01 bản tiếng Việt ),
- Bản đăng ký đạt tiêu chuẩn môi trường (03 bản tiếng Việt và 01 bản tiếng Anh ).

Chúng tôi xin bảo đảm độ chính xác của các số liệu trong các văn bản đưa trình và cam kết rằng Dự án của chúng tôi không sử dụng các loại hoá chất, chủng vi sinh trong danh mục cấm của Việt Nam và trong các công ước quốc tế mà Việt Nam tham gia. Chúng tôi cũng xin bảo đảm rằng các tiêu chuẩn, định mức của các nước và các tổ chức quốc tế được trích lục và sử dụng trong bản đăng ký của chúng tôi đều chính xác và đang có hiệu lực. Chúng tôi xin cam đoan sẽ tiến hành xây dựng các công trình xử lý chất thải đúng thời hạn và sẽ đảm bảo kinh phí vận hành công trình xử lý và giám sát môi trường.

Nếu có gì sai phạm chúng tôi xin hoàn toàn chịu trách nhiệm trước Pháp luật nước Cộng hoà xã hội chủ nghĩa Việt Nam.

Chúng tôi làm đơn này đề nghị Bộ Khoa học, Công nghệ và Môi trường (UBND Tỉnh, Tp. trực thuộc Trung ương, Bộ được uỷ quyền) xác nhận.

Giám đốc Dự án  
(Ký tên và đóng dấu)

1998 年 4 月 29 日 투자프로젝트의 환경영향평가보고의 작성과 심사에 관한  
490/1998/TT-BKHCMNT 통지 부록 V

환경영향평가보고서 승인서 양식

Bộ khoa học, công nghệ và môi trường Cộng Hoà Xã Hội Chủ Nghĩa Việt Nam  
Độc lập - Tự do - Hạnh phúc

(UBND Tỉnh/Tp.) -----

Số: ..... /QĐ-BKHCMNT (Nơi ban hành QĐ), ngày tháng năm 199 .

quyết định của bộ trưởng

bộ khoa học công nghệ và môi trường

(Chủ tịch UBND Tỉnh/Tp trực thuộc Trung ương)

Về việc : Phê chuẩn báo cáo đánh giá tác động môi trường của dự án

-----

Bộ trưởng

bộ khoa học, công nghệ và môi trường

(Chủ tịch UBND Tỉnh/Tp trực thuộc Trung ương)

附 錄

-Căn cứ Luật Bảo vệ môi trường được Quốc Hội Nước Cộng hoà xã hội chủ nghĩa Việt Nam thông qua ngày 27 tháng 12 năm 1993.

-Căn cứ Nghị định số 175/CP ngày 18 tháng 10 năm 1994 của Chính Phủ về hướng dẫn thi hành Luật Bảo vệ môi trường.

-Căn cứ Nghị định số 22/CP ngày 22 tháng 05 năm 1993 của Chính Phủ về nhiệm vụ, quyền hạn và tổ chức bộ máy của Bộ Khoa học, Công nghệ và Môi trường (UBND Tỉnh/Tp trực thuộc Trung ương)..

-Xét Đơn xin thẩm định báo cáo đánh giá tác động môi trường ngày tháng năm 199  
của.....  
.....

-Xét Biên bản họp Hội đồng thẩm định Báo cáo đánh giá tác động môi trường của dự án.....ngày tháng năm 199 .

quyết định

Điều 1. Phê chuẩn nội dung Báo cáo đánh giá tác động môi trường của Dự án .....  
.....

đã được Hội đồng thẩm định thông qua ngày tháng năm 199 và những nội dung đã được bổ sung theo yêu cầu (trường hợp tổ chức Hội đồng thẩm định).

Điều 2. Chủ Dự án có trách nhiệm thực hiện đúng những nội dung đã được nêu trong Báo cáo đánh giá tác động môi trường và những yêu cầu đối với Chủ Dự án kèm theo Quyết định này.

Điều 3. Báo cáo đánh giá tác động môi trường của Dự án và những yêu cầu đối với Chủ Dự án là cơ sở để các cơ quan quản lý Nhà nước về bảo vệ môi trường kiểm tra việc thực hiện bảo vệ môi trường của Dự án.

Điều 4. Sau khi hoàn thành các hạng mục công trình về môi trường, Chủ Dự án phải có báo cáo bằng văn bản gửi Cơ quan quản lý Nhà nước về bảo vệ môi trường để kiểm tra .

Điều 5. Ủy nhiệm Sở Khoa học, Công nghệ và Môi trường Tỉnh/Tp..... theo dõi, giám sát việc thực hiện bảo vệ môi trường của Dự án.

bộ trưởng

bộ khoa học, công nghệ và môi trường

Nơi nhận:

-Chủ Dự án . (Chủ tịch UBND Tỉnh/Tp trực thuộc Trung ương)

-Bộ/ngành liên quan

-UBND tỉnh/Tp.

-Sở KHCN&MT tỉnh/Tp.

-Lưu VP Bộ/UBND tỉnh/Tp.

附 錄

1998 年 4 月 29 日 투자프로젝트의 환경영향평가보고의 작성과 심사에 관한  
490/1998/TT-BKHCNMT 통지 부록 VI

### 환경기준등록확인증 양식

Bộ khoa học, công nghệ và môi trường Cộng Hoà Xã Hội Chủ Nghĩa Việt Nam  
Độc lập - Tự do - Hạnh phúc

(UBND Tỉnh/Tp.) -----

cục môi trường

(Sở KHCN&MT)

Số ..... /CMTg (Nơi ban hành ), ngày tháng năm 199 .

(Ký hiệu văn bản của Sở)

### Phiếu Xác Nhận

Bản đăng ký đạt tiêu chuẩn môi trường

của dự án:

.....

cục trưởng cục môi trường

(Giám đốc Sở KHCN&MT Tỉnh/Tp trực thuộc Trung ương)

xác nhận

Điều 1. Dự án : \_\_\_\_\_

đã trình nội Bản đăng ký đạt tiêu chuẩn môi trường, ngày \_\_\_ tháng \_\_\_ năm 199 .

Điều 2. Chủ Dự án có trách nhiệm thực hiện đúng những nội dung đã được nêu trong Bản đăng ký đạt tiêu chuẩn môi trường.

Điều 3. Bản đăng ký đạt tiêu chuẩn môi trường của Dự án là cơ sở để các cơ quan quản lý Nhà nước về bảo vệ môi trường kiểm tra việc thực hiện bảo vệ môi trường của Dự án.

Điều 4. Sau khi hoàn thành các hạng mục công trình về môi trường, Chủ Dự án phải có báo cáo bằng văn bản gửi Cơ quan quản lý Nhà nước về bảo vệ môi trường để kiểm tra .

cục trưởng cục môi trường

Nơi nhận:

-Chủ Dự án . (Giám đốc Sở KHCN&MT Tỉnh/Tp trực thuộc Trung ương)

-Bộ/ngành liên quan

-UBND tỉnh/Tp.

-Sở KHCN&MT tỉnh/Tp.

-Lưu VP Cục MTg.

야생희귀 동식물 목록

제 1 범주

IA- 야생식물(학명):

1. *Calocedrus macrolepis*
2. *Taxus chinensis*
3. *Cephalotaxus fortunei*
4. *Podocarpus neriifolius*
5. *Pinus kwangtungensis*
6. *Pinus dalatensis*
7. *Glyptostrobus pensilis*
8. *Keleleeria calcarea*
9. *Amentotaxus argotenia*
10. *Abies nukiangensis*
11. *Aquilaria crassna*
12. *Copressus torulosa*
13. *Ducampoponus krepfii*

IB- 야생동물(학명):

1. *Rhinoceros sondaicus*
2. *Bos gaurus*
3. *Bos sauveli*
4. *Bos bangteng*
5. *Bubalus bubalis*
6. *Elephas maximus*
7. *Cervus eldi*
8. *Cervus porcirus*
9. *Moschus moschiferus*



10. *Panthera tigris*
11. *Panthera pardus*
12. *Neofelis nebulosa*
13. *Helarctos malayanus*
14. *Trachipithecus phayrei*
15. *Rhinopithecus avunculus*
16. *Pygathrix nemaus*  
*Pygathrix nigripes*
17. *Presbytis francoisi francoisi*  
*Presbytis francoisi poliocephalus*  
*Presbytis francoisi delacouri*  
*Presbytis francoisi hatinensis*  
*Presbytis francoisi francoisi ap*
18. *Hylobates concolor concolor*  
*Hylobates concolor leucogensis*  
*Hylobates lar*  
*Hylobates concolor gabrienlae*
19. *Arctictis binturong*
20. *Chrotogale owstoni*
21. *Prionodon pardicolor*
22. *Galeopithecus temminski*
23. *Mastes flavigula*
24. *Nycticubus pigmaeus*
25. *Petaurista elegans*  
*Petaurista lylei*
26. *Belomys*  
*Belomys pearsoni*
27. *Canis aurues*
28. *Pavo muticus imperatir*
29. *Lophura diardi diardi*  
*Lophura imperialis Delacouri*  
*Lophura diardi Bonoparte*
30. *Polyplectron bicalcaratum*

附 錄

*Polyplectron germaini*

31. *Rheinartia ocellata*
32. *Grus antigone*
33. *Crocodylus porosus*
34. *Crocodylus siamensis*
35. *Ophiogus hannah*
36. *Paramesotriton deloustan*

제 2 범주

IIA- 야생식물(학명):

1. *Dalbergia oliverrii* Gamble  
*Dalbergia bariaensis*  
*Dalbergia oliverrii* Gamble  
*Dalbergia dongnaiensis*
2. *Azelia xylocarpa*
3. *Sindora cochinchinensis* Gõ mât  
*Sindora tonkinensis*
4. *Pterocarpus pedatus* Pierre  
*Pterocarpus cambodianus* Pierre  
*Pterocarpus indicus* Willd
5. *Chukrasia tabularis* A.just  
*Chukrasia* sp  
*Chukrasia* sp
6. *Dalbergia cochinchinensis* Pierre  
*Dalbergia annamensis*  
*Dalbergia combodiana* Pierre
7. Pomu
8. *Diospyros mun* H.lec  
*Diospyros* sp
9. *Markhamia pierreii*
10. *Madhuca pasquieri*
11. *Burretiodendron hsienmu*

12. *Erythrophleum fordii*
13. *Padocarpus fleuryi*
14. *Rauwolfia verticillata*
15. *Morinda officinalis*
16. *Lilium brownii*
17. *Panax vietnammensis*
18. *Amomum longgilgulare*
19. *Amomum tsomo*

IIB- 야생동물(학명):

1. *Macaca arctoides*  
*Macaca mulatta*  
*Macaca assamensis*  
*Macaca nemestrina*
2. *Capricornis*
3. *Felis bengalensis*  
*Felis marniorata*  
*Felis temmiskii*
4. *Lutra lutra*
5. *Selenartos thibethanus*
6. *Cuon alpinus*
7. *Ratufa bicolor*
8. *Buceros bicornis*
9. *Indotestudo elongata*
10. *Pelochelys bibroni*

175/CP 환경보호법시행에 관한 정부의정 부록 IV

각종 운송차량 배기가스 기준

각종 신차 배기가스기준

- 1/ 휘발유사용차량은 A 기준을 따라야 한다.
- 2/ 경유사용차량은 B 기준을 따라야 한다.

A 기준

중량(Reference weight)(RW)	CO	HC	NOx
RW < 750	65	6.0	8.5
750 < RW < 850	71	6.3	8.5
850 < RW < 1020	76	6.5	8.5
1020 < RW < 1250	87	7.1	10.2
1250 < RW < 1470	99	7.6	11.9
1470 < RW < 1700	110	8.1	12.3
1700 < RW < 1930	121	8.6	12.8
1930 < RW < 2150	132	9.1	13.2
2150 < RW	143	9.6	13.6

B 기준

중량(Reference weight)(RW)	CO	HC +NOx
750 < RW < 850	58	19
850 < RW < 1250	67	20.5
1250 < RW < 1470	76	22
1470 < RW < 1700	84	23.5
1700 < RW < 1930	93	25
1930 < RW < 2150	101	26.5
2150 < RW	110	28

본 기준에서

- 차량중량: 미적재중량 + 100 kg
- CO: Carbon monooxit
- HC: Hydrocacbon
- NOx : 질소화합물

3/ 각종 이륜차 및 스쿠터는 다음의 배기허용기준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Hydrocacbon 5.0 g/km 미만
- Carbon monooxit 12.0 g/km 미만

附 錄

175/CP 환경보호법시행에 관한 정부의정 부록 V.1

운송차량소음 기준

차종	신차 허용기준(dBA)	중고차 허용기준(dBA)
125cc 미만 자전거	79	92
125cc 이상 실린더 장착 자전거 및 3륜자전거	83	92
12 인승 미만 관광차량	83	92
경운송차량	84	92
10,000cc 미만 운송차량 및 버스	87	92
10,000cc 이상 운송차량 및 버스	89	92

175/CP 환경보호법시행에 관한 정부의정 부록 V.2

지역별 소음기준(단위 dBA)

지역	06 시 - 18 시	18 시 - 22 시	22 시 - 06 시
제 1 지역	55	50	45
제 2 지역	65	60	50
제 3 지역	70	65	55
제 4 지역	75	70	60
제 5 지역	80	75	65

- 제 1 지역 : 병원, 유치원, 학교시설, 도서관, 연구원 등의 시설지역
- 제 2 지역 : 거주지역, 호텔, 행정기관
- 제 3 지역 : 상업지역, 통행로에서 15m 이내의 지역, 시장, 주차장, 항구
- 제 4 지역 : 경공업지역
- 제 5 지역 : 중공업지역

현안분석 99-03

북한과 베트남의 환경보호법제비교연구

---

1999년 12월 24일 印刷

1999년 12월 31일 發行

發行人 徐承完

發行處 한국법제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90-4

전화 : (579)0090, 0308

등록번호 : 1981.8.11. 제1-a0190호

---

값 5,500 원

- 本院의 승인없이 轉載 또는 譯載를 禁함.
- ISBN 89-8323-117-3 93360

